

제438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8월25일(화)

장 소 정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라. 금융위원회 소관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증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2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라. 금융위원회 소관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증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3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10시18분 개의)

○소위원장 강준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8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정부의 예산집행에 부당한 부분은 없었는지, 목표한 성과는 잘 달성되었는지, 내년 예산에 반영될 부분은 무엇인지 등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의사 진행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소위원회 언론 촬영 및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고자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위원회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 보고를 청취한 후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기관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그리고 제도개선 의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상세한 기준은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심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을 심사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국가보훈부 소관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순으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구체적인 심사 방법에 대해서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시정요구 현황 자료를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등 과정을 통해서 97건의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과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모든 건에 대해 면밀하게 심사하여야 하겠으나 이 중에 상당수의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동의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부 측에서 동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에서 제시한 결론과 같이 시정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정부가 동의 곤란하다고 하는 사업과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시정요구 유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심사하여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답변은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 중에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시는 관계자분이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라. 금융위원회 소관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10시22분)

○소위원장 강준현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곽현준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금융위원회 심사자료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1번 금융 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 추진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보조 사업에 대해서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하고 당초 설치 목적과는 관련성이 낮은 사업의 예산 집행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아래쪽 시정요구안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 지원,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인허가·규제 관련 애로사항 해소 및 경영환경 개선 등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라는 시정요구 의견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1쪽입니다. 금융……

○소위원장 강준현 잠깐만요. 1쪽?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예.

○소위원장 강준현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이어서 2쪽, 2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과 햇살론15 사업입니다.

3쪽에 보시면 두 사업은 공통적으로 높은 순대위변제율과 이에 따른 재정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정요구안은 4쪽에 정리되었습니다.

먼저 제도개선 요구로 금융위원회는 기존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및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 및 회수율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2026년부터 통합 운영되는 햇살론 특례보증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주 특성을 반영한 위험관리 및 조기경보 체계 수립, 상환율 개선 실적 점검, 순대위변제율 추이를 예상 사업손실을 산정에 반영하되 목표 보증공급 규모 축소 방지, 구상채권 회수와 연계한 채무자 재기 지원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내용이며 유형은 제도개선이고.

부대의견(안)이 있습니다. 내용은 ‘금융위원회는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의 대위변제율 축소 및 회수율 제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이어서 5쪽입니다.

3번,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청년도약계좌 사업인데 여섯 가지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1번, 청년도약계좌 출연금이 과도하게 교부된 문제.

이어서 6쪽입니다.

2번, 2026년 청년미래적금 등 정권마다 새로운 청년 자산형성 상품 출시로 인한 혼란 문제.

3번, 청년미래적금 운영에 있어서 안내 오류 등 혼선 문제.

4번, 청년미래적금으로의 전환율이 예상보다 낮을 수 있을 것에 대한 우려.

5번, 가구원 동의를 받기 어려운 청년 등 청년미래적금의 사각지대 문제.

6번,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 등입니다.

7쪽을 보시면, 먼저 출연금 과다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경우 가입실적 등에 기반한 실제 기여금 지급 소요를 산출함으로써 적정 규모의 출연금을 편성하여 교부할 것, 금융위원회는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금액은 불용 처리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내 유보금 중 사업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재원은 조기에 국고에 반납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금융위원회는 사업이 종료된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사업 잔액을 즉시 회수할 것.

세 가지 시정요구(안)이 있습니다. 이 중 1번과 2번은 시정·제도개선 두 가지로 유형이 제시되어 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청년상품 신설로 인한 혼란 문제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청년 자산형성에 관하여 장기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일관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주의 요구, 상품 가입 안내 오류에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사업 수행 시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안내함으로써 정책 집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주의 요구.

8쪽입니다.

신설 상품으로의 전환을 문제에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에서의 전환 및 연계 가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청년미래적금의 가입기간 연장 또는 가입대상 확대 등 청년 참여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그리고 청년미래적금 사각지대에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는 지원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년미래적금 가입자의 탈락 요인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이고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청년 지원사업 평가 부재에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는 실제 자산형성 사업이 청년 자립에 기여했는지 사후에 평가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성과지표 체계를 정립할 것이라는 내용의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3번·4번·5번 사항은 2026년 사업인 청년미래적금 운영에 관한 것으로 결산 시정조치로 할지, 부대의견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이야기한 대로 우선 청년미래적금은 저는 부대의견이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의 차이는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 시정과 제도개선, 시정과 제도개선, 2개가 있습니다. 박홍배 위원께서 시정 요구를 하셨는데 다수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정부 측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큰 차이는 없고 저희가 잘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면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잘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부위원장님이시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조정훈 위원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질의를 드릴게요.

청년도약계좌가 지금 매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목표를 과다하게 선정해서 집행이 저조한 상태가 3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따라서 이 지적이 올해가 처음이 아니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 매년 시정요구사항은 낮추라고 하시고 제도개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2023년 도입된 이후에 무슨 제도개선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저희가 가입 조건들을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바꾸는 그런 절차와 청년들한테 안내하는 그런 홍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23년·24년·25년 신

규 가입 그리고 가입 유지가 그렇게 크게 좋아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제도개선이라는 제안을 하셨는데 어떤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해야 26년 결산할 때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청년도약계좌는 계속사업에서 종료사업으로 갔기 때문에.....

○**조정훈 위원** 종료되는 겁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종료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예산.....

○**조정훈 위원** 27년에는 예산을 안 태울 겁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27년에는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조정훈 위원** 그러면 끝난 것을 뭘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는 겁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회수 부분, 잔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이야기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청년들한테 지급해야 될 예산은 반영이 되고 있고 결산 과정과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을 거치면 이게 바로잡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희망과 목표는 컸는데 실적이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이번에 청년미래적금 할 때 저희가 이런 지적들을 잘 반영해서 새로운 제도를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위원장님, 저 개인적으로는 제도개선도 동의가 되는데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이름이 바뀌지만 취지하고 성격이 비슷한 사업이 27년에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여야 진영의 문제가 아니고 정책의 효율성 문제기 때문에 청년도약계좌 3년 또는 4년 운영한 것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복기 그리고 평가 그리고 개선방향에 대한 정확한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한두 달 뒤에 또 27년 예산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예산 올라올 텐데 비슷비슷하고 이름만 바뀌서 올라오면 또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개선으로 하더라도 이 제도개선의 핵심은 청년도약계좌 4년 치에 대한 냉정한 평가 그리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갖고 와야 27년 예산을 검토하는 데 쓰겠다 약속을 받으면 저는 제도개선 동의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정부 측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저 잠깐만.....

○**소위원장 강준현** 신동욱 위원님.

○**신동욱 위원** 저도 사실은 비슷한 의견인데, 이게 이름은 되게 좋잖아요. 물론 26년 올해 청년미래적금으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제도를 만들어서, 가입자 수가 100명 단위의 이런 정책을 정부가 추진했는데 이게 단지 홍보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름만 그냥 홍보성으로 이런 게 나왔고 실제로 청년들이 보기에는 도약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냉정한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드

는데, 저는 정무위 처음 왔습니다만 이게 이름만 그냥 청년미래적금으로 바뀐다고 해서 실효성 있게, 우리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숫자를 보니까 듭니다.

그래서 청년도약기금이 유명무실화되니까 이름만 그냥 청년미래적금으로 바꾸신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보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보고도 따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2년도에 도입돼서 한 삼사 년 운영하니까 그에 대해서 저희가 제도를 개선해야 될 내용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청년미래적금에 반영했는데 위원님들께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김용만 위원님.

○김용만 위원 이게 결국은 얘기하셨던 것처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인데,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하면서……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전환하는 연계사업, 지금은 연 2회만 허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김용만 위원 그 연 2회를 더 확대하는 것에 지금 동의를 해 주신다고 이렇게 의견을 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대를 하신다면 얼마나 확대를 하신다는 것인지……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당초 1회만 하려고 했는데 2회를 했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미래적금을 해 보니까 많이 홍보를 했지만 청년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부가 판단해 보고 필요하면 당연히 가입 기회를 더 드릴 수 있는 제도개선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 2회에서 더 필요하다는 얘기에 동의를 하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아까 말씀드렸는데 원래 1회인데 2회까지 늘렸는데 3회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당연히 정부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저희는 처음에 의견을 드릴 때 상시로 해도 되지 않느냐 얘기를 했던 건데, 굳이 우리가 왜 3회라는 것에 제한을 두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도약계좌를 쓰셨던 분들이 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데 딱 해당 기간, 허락한 기간에만 해야 된다는 게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굳이 또 3회로만 해야 된다는 건 들어 보니까 꼭 3회가 아니고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쓰시던 분들이 진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그냥 기다리지 않고 전환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리고 이것은 좀 문제였던 것 같은데 심사오류, 할 때 우대형인 줄 알았다가 일반형으로 뒤바뀌는 이런 행정 실수 같은 것들은 이런 건 없어야 될 겁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박홍배 위원 어제 저희가 대체토론하면서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달에 접수되었던 건수가 234만 건 그리고 준비되었던 예산이 대부분 다 집행이 된 셈이지요, 청년미래적금의 경우에?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미래적금은 아직, 이제 모집을 했으니까……

○박홍배 위원 집행될 예정?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앞으로 집행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홍배 위원 예정인 셈이지요. 그러니까 목표치를 채운 셈이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목표치에는 좀 미달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김용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더 공부를 하고 더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박홍배 위원 어쨌든 지난 3년간 출시되었던 청년도약계좌의 상품성이 이를 떼면 만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월납입한도를 70에서 50만 원으로 줄이고 대신 정부기여금을 3에서 6%, 12%로 늘리면서 상품성이 좀 개선이 됐다. 그래서 기존에 지난 3년간 발생했던 문제들, 특히 서금원에 과다하게 교부되고 연말에 서금원에 1140억 원의 잔여자금이 남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상품성 개선과 이번 1차 234만 명의 적금 가입으로 어느 정도 제도개선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관련해서 부위원장님, 아까 조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 그다음에 향후에 효율적 운영 계획과 관련해서 다음에 꼭 말씀해 주시는 걸로.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배 위원 위원장님, 관련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시정의견 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제도개선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예.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그러면 3·4·5번은 부대의견으로 하시는 것으로…… 청년미래적금 관련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3·4·5번이요?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예, 7쪽과 8쪽의 3·4·5번인데요. 주의할 것을 주의한다, 금융위원회는 확대 방안을 강구한다, 금융위원회는 마련한다 해서……

○김용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정훈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보고를 드려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부대의견으로 굳이 달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확대하는 부분까지도 검토를 한다는 것을…… 달까요, 부대의견으로?

○조정훈 위원 예, 부대의견 하면 누구에게 피해 갈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의지가 있으니까.

○김용만 위원 그러시지요.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그러면 이 세 건의 시정요구안은 부대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예.

그러면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다음, 9쪽입니다.

4번,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관련입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채무자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1년 만에 과다 불용

해서 재원이 부족해지는 등 수요 추계의 정합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하여 두 가지 시정요구안은 표 아래쪽에서 보시면 1. 연중 재원 소진으로 인한 미지급금 발생과 타 사업 전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추이와 실적을 반영하여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수요를 면밀히 추계할 것, 2. 예산 부족으로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유형은 모두 제도개선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동의드리며 이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도개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예산이 부족하고 올해도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계가 맞지 않은 것은 제도개선해서 국민들의 접근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추가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들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다음, 10쪽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입니다.

장기간 연체된 개인 채권을 새도약기금에서 일괄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상환부담을 완회시킴으로써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네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적기 매입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된 측면.

11쪽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당초 취지인 경제적 재기 지원보다 채권 매입 및 소각에만 편중된 문제.

셋째, 채권매입가율이 당초 예상보다 낮은데 향후 잔여재원 활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부분.

넷째, 채무자의 상환능력 심사 관련 법 개정이 2026년 5월 완료됨에 따라 심사 개시시점이 9개월 지연된 문제 등입니다.

이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으로 먼저 저조한 매입 실적 관련해서 세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1-1번 보시면 금융위원회는 대부업권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협약 참여가 저조한 원인을 면밀히 점검하여 실제 매각 가능한 채권 규모를 토대로 매입목표를 현실화하고 채권 매입가율 조정이나 채권 매각에 따른 손실을 보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등 대부업권의 새도약기금 참여 방안을 마련할 것, 주의 사항입니다.

1-2번, 금융위원회는 목표한 채권 매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대부업, 상호금융, 저축은행들과의 협약 조속 추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고려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요구고요.

12쪽입니다.

1-3번, 금융위원회는 당초 매입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주의 요구입니다.

두 번째 문제로 경제적 재기 지원이 미흡한 데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상환능력 심사 과

정에서 채무자의 근로능력, 재기지원 수요 등을 확인하여 개인별 재기계획을 수립하고 채무조정 완료 후 취업상태, 소득변화, 재연체 여부, 금융생활 정상화 등 재기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검증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내용인데 유형은 시정·주의·제도개선 세 가지로 제기되었습니다.

세 번째, 잔여재원 활용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는 잔여재원 활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고 유형은 역시 시정·주의·제도개선 세 가지로 제기되었습니다.

넷째, 법 개정 관련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는 향후 근거 규정을 마련한 후 소요 재원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주의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여야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에서 지적해 주신 개인별 재기계획을 수립하고 고용복지와 연계를 한다든지 재기 성과를 분석해서 국회에 보고를 하라든지 잔여재원 활용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적을 해서 이게 제대로 되는지 패널조사도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내용에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1-2 시정요구안에 시정·주의·제도개선으로 돼 있고 그다음 내용 3번 재원 활용에 대해서도 시정·주의·제도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서일준 위원님 안대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그렇게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욱 위원님.

○신동욱 위원 새도약기금 관련 문제를 보면 이게 공공기관이 소유한 채권을 매입한 게 대부분이고 문제가 되는 게 대부업체잖아요. 그렇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렇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실제로 가장 절박한 분들은 대부업체에 발목 잡혀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대부업체 채권 매입을 못 하면 그냥 말하자면 부채 탕감이 안 되는 것인데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게 현실적으로 방법이 있습니까?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채권 매입하는 것은 협상이 좀 쉬울 수 있는데 대부업체는 우리는 못 팔겠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신동욱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제도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인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래서 지금 대부업을 빼고는 협약으로 이 제도를 추진하기 때문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부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입 가격을 조금 배려를 한다든지, 뭔가 이것을 좀 사와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 대부업체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대부업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면 핵심은 매입 가격을 좀 더 높여 달라는 건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대부업이 좀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적 영역이고 본인들이 사 온 가격이 있는데 손해 보고 팔기는 어렵다 이런 측면이 있고 나름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가들이 가격표를 평가해서 매입 가격을 저희가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신동욱 위원** 차별화해도 무슨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거기는 좀 더 비싸게 사 주면 비싸게 사 주는 쪽의 이를 테면 배임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기존에 매각했던 대부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조정을 하면 되니까……

○**신동욱 위원** 하여튼 노력 중이신 거지요? 이 부분은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상당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발언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프로그램이 예산 반영 될 때 정무위원이 아니었고 또 그렇게 큰 논란 없이 통과했으리라 짐작은 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거래거든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맞습니다.

○**조정훈 위원**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거래인 거예요. 그렇지요? 거기에 정부가 관여를 해서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거래 부채를 탕감하겠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재원 마련이, 우리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그렇지요? 내가 낸 세금이 다른 개인과 개인 간에 거래된 사적거래 부채 탕감에 쓰인다는 것을 알면 세금 낼 사람이 더 줄어들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 운용의 대원칙에 우리 대한민국이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건데 이런 프로그램이 과연 큰 틀에서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큰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대부업체에 소통을 해서 가지고 채권을 팔아라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대부업체에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그냥 앞으로 이 기준에 맞는 사람들, 여기 보니까 소득기준 이것 다 엄격하게 본다고 하는데 이 정도의 사람에게는 대부를 해 주고 한 오륙 년, 7년 지나면 받지 않아도 국가가 채권을 매입해 준다는 말도 안 되는 인센티브를, 지금 인센티브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이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금융과 경제원칙에 굉장히 충돌되는 겁니다. 물론 상당히 많은 채권, 장기연체 또는 빚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서민들께서, 이것이 주는 효과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위원장님, 이게 일시적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매년 있는 프로그램입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일시적입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이것 한 번입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훈 위원** 그러면 내년은 안 합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아니, 저희가 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매입을 계속해 나가

야 되니까 추가적인……

○조정훈 위원 받은 예산이라고 하면 4000억 원입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4000억을 받았고요, 민간에서 4400억을 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것은 금융회사에서 1.5조 원 규모의 자기네 연체 채권 소각하는 것을 받은 것으로 얘기하시는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거야 자신들의 채권 상각한 건데…… 그것은 자신들의 기업 활동이고요, 부위원장님.

그러면 이 4000억 원 다 소멸하면 이재명 정부 5년 기간 동안 이런 프로그램 또 없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것은 제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위원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의 대원칙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 정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에도 보면 극히 시장경제 실패에 대한 예외적인 정부의 어떤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7년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연체를 일단 한시적·제한적으로, 일회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런 정책은 박근혜정부 때도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고 이번 정부에도 있고 늘, 주빌리(jubilee)의 관점에서 상시는 아니지만 그동안 누적돼 있는 부채를 한 번씩 터는 과정으로 보시고 극히 제한적이고 한정적이고 상환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부분에 대해서 재기의 기회를 주신다 하시면 될 것 같고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저도 동의드리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경제적인 거나 범죄의 경우나 다른 사례에 비춰보면 옛날에는 불법건축물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거나 한 번씩 시스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는 것은 정치에서 중요한 행위고 우리 국민들 삶에 중요한 행위인데요. 이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의 일시성, 한 번 있는 거다라는 약속을 지금 못 하신다면서요. 이 4000억 원 받았으니까 일단 다 쓰겠다고 하신 거고 이 4000억이 끝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사업이 잘되면—모르겠습니다. 잘되는 게 뭔지—4000억이 다 소진되면 그래도 빚 못 갚는 사람 아직 있지 않을까요, 매년? 그러면 그 사람들을 한테는 이 프로그램 적용, 새로운 예산 안 짜실 것 약속하십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제가 보기에 지금도 상시적으로 법원의 회생절차도 있고 민간회사의……

○조정훈 위원 그거야 지금 시스템이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채무조정 절차가……

○조정훈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은 국가가 돈을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민간간의 거래, 사적 거래에 지금 투입을 하는 겁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여기서 공공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과연 여기에 얼마나 공적 집행이고 이것이 주는……

그러면 비슷한 또는 이것과 유사한 환경에 있는 시민들이,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부채 갚은 사람들에 대한 상실감 또는 보상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지금 위원님께서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을 말씀하시고 그 부분도 정부가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뭐가 있습니까, 그런 프로그램?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일단 장사를 잘하고 계시는 분은 저희가 일반 서민금융이나 소상공인대출을 통해서 대출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상환능력을 상실하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채무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복위에서. 그래서 계층적으로, 체계적으로 돼 있고 이 영역은 정말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부분들, 재기하기 어려운 부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아주 작은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새출발기금이라는 것도 있고 새도약기금도 있고 한데 새출발은 코로나 때 한 거고요. 이것은 7년이나 연체돼 있는 거니까 위원님, 다 동의하고 있고요. 한 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예외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제가 마이크를 너무 많이 잡아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시정요구한 게 2개가 있는데요. 저는 제도개선은 수용할 수가 없고요. 주의 정도까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용이 ‘금융위원회는 상환능력 심사 과정에서 채무자의 근로능력, 지원 수요 등등 확인하여 재기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재기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검증하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 그다음에 ‘잔여재산 활용계획 국회에 제출할 것’ 저뿐만 아니라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내신 내용들이거든요. 이것은 저는 오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 도덕적 해이 그리고 일반국민들이 봤을 때 최대한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설득을 하기 위해서도—저 개인적으로는 설득되지 않습니다만 기록에 남깁니다—이것은 주의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지금 조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부 측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적용 기준을 보면 주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느냐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로 돼 있는데 저희가 위법·부당한 사실을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아니라고 하면, 그 취지에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주의를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러면 저희가 주의로 해서 잘하라는 취지로 알아듣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리된 거지요?

수석전문위원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제기한 시정요구안에서 제도개선과 주의가 좀 차이가 있는데 내용을 좀 더 검토해 보니 다른 동료 위원의 얘기처럼 제도개선으로 일괄해될 것 같아서 저의 주의안은 철회하고 제도개선으로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1-1번 자체는 철회하고 1-2번으로 통합해서……

○**박민규 위원** 예.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예.

○소위원장 **강준현**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이어서 1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입니다.

이는 지역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프로젝트 선정 및 자펀드 결성 과정이 지연됨에 따라 과다한 자금이 산업은행에 유보되어 예산 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한 문제에 대한 시정요구안이 있습니다.

아래쪽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프로젝트 선정 단계에서 추진 여건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자펀드 결성 및 프로젝트의 투자 일정에 따라 출자금을 단계적으로 교부하고 모펀드 유보금을 다음 연도 출자금 예산 규모 산정에 반영하는 등 과도한 유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14쪽입니다.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생태계펀드) 사업입니다.

반도체 분야 집중 투자를 위한 펀드 조성을 위한 출자사업인데 세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1 투자 실적 부진, 2 반도체 분야 펀드 조성 사업이 단년도 사업으로 종료됨에 따라 투자 상황 관리 공백 우려, 3 위탁운용사 선정 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부족이라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한 각각의 시정 요구안은 1번 금융위원회는 반도체생태계펀드의 조속한 자펀드 결성 완료와 적기 투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 수요를 발굴할 것, 2번 금융위원회는 2026년 이후 사업종료 시점까지 실제 투자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등 결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두 가지 제도개선 요구가 있고 세 번째, 위탁운용사 선정 시 평가에 대해서는—부대의견입니다—금융위원회는 위탁운용사 선정 시 전략산업과 관련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력 등 미래가치를 감안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평가 기준을 수립한다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용만 위원** 얘기 좀……

○**소위원장 강준현** 김용만 위원님.

○**김용만 위원** 이게 좀 이따가 8번이랑도 비슷한 지점 같은데요. 결국은 지금 투자 실적이 저조한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안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결산을 하는 걸로 봤을 때는 다 집행이 된 걸로 나타나 있는 건데 실제 기금에 대해서, 이 자펀드가 운용하는 투자금에 대한 실적이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렇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 부분을 조금 더 투명하게 국회에서 알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요청에 동의를 해 주신 거거든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러면 그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금융위 예산 중에 통상 펀드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계속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 설정이 되는데 통상 펀드가 5년, 10년씩 가기 때문에 실제 집행하는 데는 시차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을 선정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성이 있는데 지금과 같이 많이 지연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용사와 이야기를 해서 좋은 회사를 잘 선정해서 집행을 하도록 소통을 하는 그런 정도의 노력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판단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투자를 해라 이렇게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러니까 의욕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 대상을 한마디로 모색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가지는 저희가 얘기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서 그건 아닌데……

제가 질문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는, 300억이라는 재정 출자를 한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100% 다 실적이 발생한 거라고 나와 있지만 실질적인 투자 자체가 이루어진 것은 아직 80억밖에 안 된 거지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출자해야 300억을 했기 때문에 결산 시점에서는 100% 집행이라고는 보는데 아직 실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산을 하는 기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국회가 조금 더 통제를 하고 혹은 같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동의를 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뭔지, 아마 지금 뒤에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혹시 뭔지 부위원장님 아니셔도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투자했던 내역들을 나중에 저희가 한번 평가하고 국회에 보고를 드리는 그런 절차는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반도체생태계펀드, 원전산업성장펀드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회의 결산 과정에서 보고를 할 때 집행 100%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투자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체계를 잡아서 보고

하는 방식 이런 부분들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취지였던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이해는 했습니다. 이해를 했고 어차피 결산을 할 때 자료로서 실제 업체 수 3개, 금액 80억 이렇게 돼 있으면 그게 어떤 업체냐, 재정에서 투입할 때 취지가 맞느냐 이런 부분.....

○**김용만 위원** 어떤 업체냐는 알 필요가 없고요. 정부가 지금 300억이라는 것을 출자를 한 거지 않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다른 기금들도 모여 가지고서는 1340억이 된 거예요. 그렇게 쳤을 때 정부 기준에서 80억만 투자를 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 해당 비율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결산 실적률을 반영을 한다든지와 같은 방식이나 아니면 그게 아니고 실제 우리가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300억에 대한 정부출자금은 100% 집행을 했지만 지금 투자에 있어서는 이만큼 정도밖에 실적이 나지 않았다고 같은 형태의 보고 방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부위원장님께서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정리를 해 주셔서 가지고요 추후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300억 출자분에 대한 집행 여부 말고 실제 투자가 얼마만큼 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의 모니터링 방법을 강구하셔서 가지고 따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아마 뒤에 계신 분들 지금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위원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가지고 알려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저도.....

○**소위원장 강준현** 예.

○**신동욱 위원** 이게 지금 말하자면 산업은행이 돈은 가지고 있지만 돈은 못 쓰고 있는 거잖아요. 내년에 예산 또 잡습니까, 그러면?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아닙니다. 단년도 사업입니다.

○**신동욱 위원** 올해 단년도 사업이고. 그러면 이게 산업은행이 정부출자 돈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이자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아닙니다. 그걸 받아 가지고 펀드를 하기 위해서 출자를 산업은행은 했고요.

○**신동욱 위원** 아니, 출자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모펀드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돈을 못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모펀드가 자펀드를 만드는 데 돈이 갖고.....

○**신동욱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 자펀드가 한 1340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이 펀드가 한 7~8년이 흘러 가지고 이익이 나면 그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논란이 많은데 저희가 이걸.....

○**신동욱 위원** 정부가 재정을 투자했으니까 이를테면 몇 년 안에 이것을 취지에 맞게

다 써라, 이런 가이드라인은 없습니까? 산업은행의 모펀드에서 독자적으로 판단을 합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게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다만 저희가 초기 집행을 좀 늘리도록 유도는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익이 나면 나중에 특별배당으로 국고에 회수를 하거나 또 새로운 펀드를 만들 때 그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제 말씀도 큰 취지는 김용만 위원님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돈은 썼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에서 흐르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를 구체적으로 해 주셨겠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보고를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박홍배 위원님.

○**박홍배 위원** 어제 금융위원장님께도 여쭙봤었는데 국민성장펀드의 올해 투자 예정액이 30조고 지금 7월까지의 승인액이 16.1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 투자 집행된 금액을 여쭙봤는데 답변을……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실제 그것도 캐피털 콜 방식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신안우이에 자금을 저희가 3.4조를 넣는다고 보면 PF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약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공사가 한 2~3년에 걸쳐서 가니까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박홍배 위원** 집행은 이연되어서 집행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이연돼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홍배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를 테면 1340억 원 중에서 투자 실적이 80억 원이다, 이것은 실제 투자가 집행된……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렇습니다.

○**박홍배 위원** 기표된 금액을 말씀을 하실 거고 실제 승인금액은 더 크지 않나…… 김용만 위원님 질문하고 동일한 건데 이 상황들에 대한 국회 보고 방식들을 다시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주의 관련해서는 다 동의하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이어서 1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은행 출자(원전산업성장펀드) 사업인데 역시 세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투자실적 부진 및 신속집행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음에도 1호 자펀드가 2025년 12월에 선정된 문제 둘째,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과 유사·중복 우려 셋째, 단년도 사업으로 종료됨에 따른 투자 현황 관리의 공백 우려 등입니다.

실적 부진 관련해서는 1-1번 금융위원회는 원전 관련 펀드의 조속한 자펀드 결성 완료와 적기 투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 수요를 발굴할 것, 1-2번 금융위원회는 특정 산

업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 사업을 신속집행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그리고 중복 우려에 대해서는 2번 금융위원회는 펀드 조성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른 지원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는 2026년 이후 사업종료 시점까지 실제 투자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등 결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이고 유형은 모두 제도개선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지적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이 돈이 잘 집행되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16쪽입니다. 산업은행 출자, 반도체설비 투자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반도체 산업 분야 기업에 대해 시설자금을 저리로 대출하기 위한 출자사업인데 당초 지원 취지와 달리 대기업 또는 우량기업에 저리대출 승인이 집중된 문제에 대하여, 아래 쪽 시정요구안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은 전략산업에 대한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 기업의 신용도와 자체 자금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업별 지원한도를 설정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율을 제고할 것이라는 내용이고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중견·중소기업이나 지방에 이 자금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정책적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17쪽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 부실차주 관련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사업으로, 새출발기금의 사해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해당 사유만 해소되면 새출발기금과 재약정이 가능해 사해행위를 억제할 실질적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당초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회복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는데 이후 고금리·내수회복 지연에 따른 간접피해자 등으로 지원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재정부담이 증가되었고 채무조정 이후 그 수혜자의 경제적 자립과 재기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각 지적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18쪽입니다.

18쪽 아래쪽에 먼저 1번,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무조정 신청자의 재산조사를 강화하고 사해행위자에 대한 재약정 요건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 그리고 2번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건전성 및 국가재정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채무조정 수혜자의 재연체율 및 경제활동 복귀 여부 등 장기 성과를 종합적으로 사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등 사업 종료 이후의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이고 유형은 모두 제도개선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19쪽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기업구조혁신펀드입니다.

구조조정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한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출자하는 사업으로, 제4호~제6호 블라인드펀드 등 펀드의 투자 가능액 규모가 과도한 데 대하여 아래쪽 시정요구안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4호~제6호 펀드의 투자집행률을 제고하고 다른 펀드에 비해 수익률이 낮다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 매력도 증진 노력을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20쪽부터는 기금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대하여, 20쪽 채고자산매각대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출자금용회사의 주식 매각 수입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기 때문에 기금 청산을 준비해야 되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각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안은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2026년 목표한 주식 매각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각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잔여재산 처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의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21쪽,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총괄사항입니다.

과도한 이월·불용액 및 계획변경이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하여 시정요구안은 22쪽 아래 쪽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과도한 이월·불용액 및 계획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는 내용의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또 남았나요? 부대의견?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예, 이제 부대의견만 남았습니다.

24쪽 보시면, 저희가 앞서 5건 부대의견을 이미 채택을 했고요. 추가로 금융위원회는 실질적인 청년 지원을 위해 청년미래적금 등의 내실화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민간에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청년 창업가 대출 지원 참여 방안을 검토한다라는 2건이 제기된 것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금융위원회 소관의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금융위원회 소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시정 1건, 주의 5건, 제도개선 19건으로 총 25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 금융위원회 소관의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융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대영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정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양청삼 사무처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이정렬 부위원장은 국무회의 참석 관계로 사무처장이 대신 참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곽현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1번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총괄사항으로, 출연사업을 직접 수행 사업으로 임의 전환하거나 인건비 부족 분 충당 등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전용한 것에 대하여, 시정요구안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불필요한 예산 전용을 근절할 것이라는 내용이고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양청삼** 이광일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사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이것은 위원회 차원에서 임의로 전용한 것은 아니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과도한 출연사업 비중을 직접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전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들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이어서 2쪽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사업의 내역사업 중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사업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도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현행 인증제도는 심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 또 1-2번입니다. 기관의 전체 업무가 아닌 신청기관이 설정한 일부 업무에 한정하여 신청할 수 있어 핵심 개인정보 시스템이 인증 범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점, 2번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들이 제외되어 있는 점 등의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관련 시정요구안으로는 3쪽에서 보시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고 처분 이력을 인증 평가 및 과징금 감경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등 ISMS-P 사후관리를 개선하고 인증심사기관의 객관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ISMS-P 인증의 범위가 실제 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인증 범위 설정 기준을 구체화할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ISMS-P 인증 대상 또는 집중관리시스템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을 전수 파악하여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세 가지고 모두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양청삼** 김현정 위원님, 박상혁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1-1번, 1-2번, 2번 그 세 가지 항목 모두에 대해서 위원회 입장에서는 동의하고요.

그리고 금년 4월 달에 과기정통부랑 전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ISMS-P 인증제도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범정부 대책으로 확정을 해서 지금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들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신동욱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런데 유출 사고가 났는데도 제외 안 한 이유는 뭔가요, 그동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양청삼 제외 안 한다는……

○신동욱 위원 아니요, 인증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는데 그러면 인증기관 지정할 때라도 이런 사고가 나면 뭔가 패널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그것 안 한 이유는 뭔가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양청삼 사고가 났을 적에 그 취소와 관련된 내용들이 법령에는 있었는데, 과기정통부의 ISMS 제도하고 지금 위원회가 운영을 하는 ISMS-P 제도가 사실상 하나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과기정통부의 ISMS 제도의 근거가 되는 정보통신망법에는 취소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서 그 부분을 인증 취소를 제대로 못 하고 있었는데 금년도 4월 달에 양 부처가 합동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면서 인증 취소 및 사후관리 또 심사기관 지정에 관련해 가지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신동욱 위원 이미 그게 정리가 됐다 이거지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양청삼 예, 정리가 돼서 이제 그 부분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4쪽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사업의 내역사업 중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사업에 대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 또는 시정명령 이력이 있는 기관이 S·A 등급을 받은 사례 및 모든 공공기관을 동일한 체계로 평가하는 문제,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개인정보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문제,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전년 대비 하락하였고 컨설팅 성과가 미흡한 문제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정요구안이 두 가지입니다. 5쪽에서 보시면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기관과 집중관리시스템 대상 기관을 고위험군으로 구분하여 현장평가를 강화하고 차등화된 평가 체계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유출 규모 및 반복성, 처분의 중대성 등이 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 제도를 개선할 것이고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및 컨설팅이 형식적인 실적 관리가 아닌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수준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로 제시되었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양청삼 기본적으로 김현정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그리고 서일준, 조정훈 위원님, 김용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다만 서일준, 조정훈 위원께서 지적하신 컨설팅 제도개선에 대한 어떤 시정요구가 시정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조치 유형의 기준을 고려해서서 제도개선으로 완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 제도에 2026년 예산액이 지금 25년이랑 동일하

지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양청삼 예, 11억 정도……

○김용만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유출사고가 계속 발생하는데 공공기관 평가이기는 하지만 사기업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더 강화가 돼야 되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예산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동의를 제도개선이든 시정이든 한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강화를 시킬 건지 개선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양청삼 실질적으로 이제 기준을 더욱더, 현장 평가라든지 심층평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기준은 바꿀 수 있는데 현장에서 직접 그만큼 꼼꼼하게 살펴보고 하게 되면 예산도 일부 증액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동의를 하셔 가지고 이 공공기관 평가에 대해서 강화를 하신다면 그만큼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동일한 예산을 갖고 오셨잖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양청삼 일단 한정된 예산 사정이 있어 가지고요. 그렇게 된 건데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실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만 위원 이게 강화가 되어야 됩니다. 너무 유출사고가 많이 나니까요. 그거는 고려해서 가지고 예산 심사할 때 좀 반영해 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양청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취지에 동의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양청삼 예.

○조정훈 위원 제가 늦게 입석해서 존함을 못 들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양청삼 사무처장 양청삼입니다.

○조정훈 위원 양청삼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김용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개인정보 유출은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요. 민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사과도 안하는 것 같고 그거는 저희가 이제 문제를 삼을 거고. 공공기관에서도 정보 유출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양청삼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래서 지금 11억 예산 받으셔서 10억 9000 집행했으니까 거의 다 쓰신 거예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양청삼 예.

○조정훈 위원 근데 오히려 전체 평균 점수,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의 평가는 오히려 또 떨어졌어요. 저는 이 10억 쓴 효과가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용을 잘못하시든지, 아니 컨설팅 12억 쓰셔 가지고 제가 자세한 건 몰라서 그렇지만 모든 공공기관에 다 하신 건 아니지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양청삼 예, C나 D등급 평가를 받은 미흡 기관 90개 기관에 대해서 컨설팅을 수행한 것입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 이 자료들을 보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개인정보 유출사고 또는 시정명령이 있는 기관도 이 평가에서는 또 S하고 A를 받고…… 저는 이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느슨하다, 좋게 평가해서 느슨한 것 같아요.

그리고 10억에 대한 가성비, 11억이나 예산을 쓰셨는데 이걸로 인해서 어떤 기관이 무엇을 했고 무엇을 막았더라는 구체적인 성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바다에 물방울 몇 개밖에 안 돼서 부족했다. 예산을 올려 달라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11억 쓰신 거에 대한 성과는 11억만큼은 갖고 오셔야 될 했는지를 알아야 한 두세 배 드리면 더 좋아지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11억 컨설팅 하셔서 가지고 좋아진 건 없고 오히려 평균 점수는 떨어지고 특히 안전성 확보 조치 노력을 위한 지표는 5점 만점에 2.26점이 돼 버리고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시정사항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대로 계속 하시겠다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양청삼 제가 간단히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호수준 평가제도는 측정, 그러니까 현재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보호 수준을 측정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공공 분야에서 개인정보 관련된 안전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향상되려면 인력, 예산, 관리체계 강화, 이제 투자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일단 이걸 기본적으로 측정하는 사업이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컨설팅 사업의 제도개선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완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90개 기관에 대해서 컨설팅을 수행을 했고요. 지금 여기가 43개 기관은 컨설팅 후에 등급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봤는데 역으로 말하게 되면 사실은 50개, 여기 90개 컨설팅 기관의 절반이 넘는 기관은 등급 향상을 이루었고 그리고 사실은 90개 중의 80개는 전반적으로 점수가 향상이 됐습니다, 평균 점수가 1점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컨설팅 사업의 성과는 반드시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 혹시……

○조정훈 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컨설팅 사업에 계속 미세 조정하면서 개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개선의 여지는 있는 걸로 인정을 하신 걸로 들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아까 전 기관에서 시정의 조건이 특별한 위반 사항이 있거나 또는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양청삼 위법·부당한 부분이 있을 적에……

○조정훈 위원 예, 그 내용인데 제가 위법했다고 주장하는 건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이런 사업과 가지고 이 정도 성과 내면 누군가는 책임져요. 공공이라서 지금 그냥 시정으로 ‘다음에 잘 하세요’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시면요 저 다음에 예산 들어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산 한 줄 한 줄 다 볼 겁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신생 기관이고 지금 막 인력과 조직과 예산을 확대하는 과정이라는 걸 저 제일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설팅 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양청삼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 11억 원 전체 예산이 컨설팅 사업 예산은 아니고요. 이 11억 원 자체는 우리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까지 포함해서 1400여 개 기관을 평가하는 데 주된 예산이 들어가고요. 그중의 일부 미흡한 90개 기관에 대해서만 이 일부 예산을 활용해서 피드백 컨설팅해서 다시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평가 내용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평가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큰일 나는 거고 컨설팅 부분에 효율성과 효과성을 좀 높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양청삼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예, 그 제도를 좀 시정하라는 건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양청삼 그래서 위원님 지적은 저희 충실하게 앞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한 부분들은 사실 이게 위법·부당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개선으로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조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저도 지금 존경하는 조정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정요구 분류 기준상에 보면 위법이나 부당한 사실이라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시정이라는 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장에서는 좀 과하다고 느낄 수는 있겠다라는 지금 컨설팅과 측정하는 부분에서 성과가 나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지금 사고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부대의견으로 조금 더 평가와 측정과 컨설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를 할지에 대해서 어쨌든 예산에 대해서 조금 추가 반영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가지고서는 보고를 주신 다음에 예산을 강화하거나 늘리는, 확장하는 그런 식으로 제도개선을 한다 하더라도 부대의견은 꼭 달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양청삼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런 개선 계획들을 충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예산 심의는 심의대로 추후에 하지만 제가 얘기한 건 지금 현 기준에서 제도개선으로 한다 하더라도 부대의견을 달아서 그 부분은 좀 강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정 위원 저도 한 말씀만 좀 드리겠는데요. 제가 지난 현안질의 때도 한번 질의했던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신용정보 유출이, 반복적으로 유출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감면 기준이 너무 많아요. 전부 반복적으로 정보를 유출했는데도 ISMS-P 도입 기관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사유로 반복 유출 했는데도 다 감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요, 정보 유출을 했는데. 그게 지금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여기에서. 그거에 대해서 개선했습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양청삼 이번에 제도개선을 다 했습니다.

○김현정 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양청삼 그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ISMS-P 감면 제도를 일률적으로 40% 이하로 감면하던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ISMS-P 의무화 대상 기관으로 앞으로 주요 공공 시스템, 공공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들이 지정이 될 텐데 ISMS-P 의무 대상자가 유출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일단은 ISMS-P 관련된 감면 기준은 적용되지 않고요. 그리고 반복 사고인 경우에 기존에는 1회 반복에 15% 그리고 30% 이런 가중 기준이 있었는데 그거를 20%, 40% 그리고 3회 반복되면 80%까지 가중하는 내용으로 또 이렇게 변화를 줘서 전체적으로 국회에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완료했습니다.

○김현정 위원 제도개선을 완료했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양청삼 예.

○김현정 위원 ISMS-P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개인정보 유출한 전력이 있는 기업이 또 유출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가중을 하면 더 해야지 어떻게 감면을 더 많이 해서 우수 기업으로 평가를 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양청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고, 개선했다 이거지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양청삼 예. 유출 기업에 대한 감점도 평가제도에서도 기준을 기존의 10%에서 20점으로 감점 폭을 상향을 했고요. 그리고 유출 시점뿐만 아니라 처분 시점에도 추가 감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 내용 좀 저희 의원실에 주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양청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아까 제안드린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도개선으로 하되 부대의견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양청삼 저희들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박홍배 위원님 하실 말씀……

○박홍배 위원 아까 총 평가 대상 기관이 몇 개라고 하셨지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양청삼 1450개입니다.

○박홍배 위원 1450개 기관을 평가하고 그중에서 90개 기관을 컨설팅하고 그중에 50개 기관은 등급이 올라가고 90여 개 기관은 점수가 올라갔는데 예산 10억을 내년에도 그냥 10억 수준으로 편성하면 지금 지적하시는 형식적인 실적 관리,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제고, 저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내년에 예산 제대로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용만 위원 전체 예산 37억이잖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양청삼 예, 전체가 자유보호환경 조성, 기타 사업까지 포함해 갖고 여기 보게 되면 수준 평가뿐만 아니라 처리 방침 평가라든지 다른 사업들이 켜 있는데요……

○박홍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양청삼 저희들 일단은 현장 평가라든지 심층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부 증액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박홍배 위원 그걸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관련해서는 나중에 예산 심사할 때나 국정감사 할 때 또 논의하시면 되는 거니까 아까 존경하는 조정훈 위원님께서 정부의 요청에 동의해 주신 거지요?

○조정훈 위원 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양청삼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그러면 제도개선 하는 걸로……

○조정훈 위원 다만 한 가지 제가 지적하면 아까 시정은 위법·부당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도 있고요. 사업 추진 방식의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도 있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초면이라……

○소위원장 강준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위원장님, 뒷면 넘어가기 전에 1번, 2번 다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추가로 부대의견을 문구 잠깐 불러드려 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평가 및 컨설팅의 운영방식 개선 등 구체적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한다.

○소위원장 **강준현** 예, 맞습니다. 김용만 위원님 말씀하신 거지요?

○**김용만** 위원 국회에 계획에 대한 보고 및 집행까지도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보고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27년에 이행에 있어 가지고도 내용을 좀 추가를 해 주시면……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구체적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양청삼** 예, 충실히 이행한다. 그렇게……

○소위원장 **강준현** 됐지요?

○**김용만** 위원 예.

○소위원장 **강준현** 다음 사안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6쪽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사업의 내역사업 중 아동·청소년 디지털 잇힐 권리 실현 사업에 대하여 첫째, 사업 실적이 저조하고 성인에 대해서까지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와 둘째, 제3자 게시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7쪽의 시정요구안을 보시면 먼저 실적 및 대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잇힐 권리 실현 사업의 신청 수요 및 국가의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규모·대상을 재검토할 것.

그리고 제삼자 게시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삼자 게시물 중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 불법 유통 및 사이버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법률 지원과 플랫폼 신고 지원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과 판단 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것이라는 2건의 시정요구안이 제기되었고, 유형은 2건 모두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로 제시되었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양청삼** 박홍배 위원님, 신동욱·이강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시정요구유형을 고려해서 이 건도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8쪽,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 사업입니다.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기관과의 계약이 하반기로 지연되면서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

한 실효적인 지원이 미흡하였다는 문제 지적과 함께 시정요구안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향후 사업계획 및 일정을 조기에 확정하는 한편 잔여 예산 활용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이라는 내용의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양청삼 박민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참고로 동 사업은 금년도에 중기부 사업하고 유사·중복성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들은 편성하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9쪽,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의 내역사업입니다.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회의체 운영 관련 예산이 국외이전전문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부진에 따라 집행 전액이 동 사업과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AI 서비스 구독, 워크샵 등에 집행된 사례에 대하여 시정요구안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향후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회의체 운영 예산을 위원회 운영과 관련성이 낮은 기본경비성 경비로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유형은 주의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양청삼 신동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향후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10쪽입니다.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제 컨퍼런스 운영 사업은 제47차 GPA 서울총회 개최를 위한 행사대행 용역비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전용 없이 위원회 기본경비, 조직혁신지원 등 세부사업에서 집행하였고 행사대행 용역의 당초 계획과 실제 집행 내역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시정요구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향후 이·전용 없이 다른 세부사업을 통하여 행사 경비를 임의로 증액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주요 집행 항목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는 내용의 주의 요구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양청삼 박성훈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취지에 동의하고요. 향후 예산편성·집행 과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신동욱 위원 한말씀만 드릴게요.

앞쪽에도 그 내용이 좀 있는데, 사소한 것들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예산 전용을 너무 관행적으로 막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양청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1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명정보제도 운영, 가명정보 처리 및 안전성 검증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의 수가 감소하고 있고 결합 실적이 일부 기관에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시정요구안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결합전문기관 수의 감소와 기관별 결합 실적 편중의 원인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분야별 가명정보 결합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수요기관과 결합전문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결합전문기관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양청삼 신동욱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향후 결합전문기관의 실적하고 운영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결합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이어서 12쪽,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사업입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이른바 마이데이터 연계체계 구축 및 관련 정책 연구, 제도 운영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하위법령 정비가 지연되면서 추진 일정이 전반적으로 지연되었고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출연금을 집중 교부하여 집행 비효율을 유발하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하위법령을 신속히 완비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 사업의 일정 관리와 실수요 검증을 철저히 할 것이라는 내용의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양청삼 이강일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기본적으로 작년에는 사업 착수가 하반기에 되어서 너무 늦었었는데 올해에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다 마무리하고 올해 상반기에 착수해서 연말까지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차후에 사업 일정 관리 및 실수요 검증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것 작년하고 올해도 하는 건데 2025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건 출연금 중 거의 90%를 인터넷진흥원에 출연한 거지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양청삼** 예, 맞습니다.

○**조정훈 위원** 나머지는 불용하신 거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양청삼** 예.

○**조정훈 위원** 그런데 여기 안 계시지만 정무위원이신 이강일 위원님은 교부된 마이데이터 사업비 중 집행 잔액, 유보 재원이 과다함에도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출연금을 집중 교부하여 집행 비효율을 유발하였다. 이것도 동의하시는 거예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양청삼** 예, 기본적으로 상반기에 약간 조기 집행하는 이런 정부 방침에 따라 가지고 교부를 했었는데 차후부터는……

○**조정훈 위원** 그냥 집행해야 되니까 인터넷진흥원에 다 몰아주신 거네요, 그냥 돈 쓰느라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양청삼** 이걸 실집행 소요를 봐 가면서 집행하는 것이 사실은 맞는데요, 저희들이 약간 부주의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제도개선에 동의는 하지만 이건 진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양청삼** 예, 사업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13쪽,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번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서비스 중 개보위 소관 기반서비스가 7개에 불과한 점, 2번 이용 실적 등 활용 성과가 미흡한 점에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각각의 시정요구안으로 1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자체 서비스와 선도서비스 발굴·확산을 확대하고 지원 과제가 실제 플랫폼에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간 연계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 그리고 2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플랫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진송요구 실행 건수, 이용자 재방문을 등 플랫폼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보여 주는 지표가 성과관리체계에 반영되도록 개선할 것이라는 내용이고,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로 제기되었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양청삼** 박홍배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그리고 박민규·박홍배·신동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시정요구유형별 정의를 고려해서 동 건도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14쪽, 개인정보 침해방지 사업입니다.

개인정보 침해 관련 상담·신고 접수 및 실태 점검,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 및 조사

지원 등을 수행하는 사업인데 네 가지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첫째 신고·접수체계가 유형별로 분절되어 신속한 조치가 지연될 우려가 있음, 둘째 미처리 사건이 누적되고 있음, 셋째 반복 위반 여부가 처분의 양정 단계에서 가중 요소로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넷째 국회예산정책처에 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문제 등입니다.

각각의 시정요구안은 1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접수·분류·연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권한을 정비할 것, 2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 증가 추이에 대응하여 유출 규모 등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처리의 우선순위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장기계류 사건 관리를 체계화하는 등 사건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번 개인정보위원회는 반복사고 기관을 별도로 식별·관리하고 반복 위반 여부가 처분의 양정 단계에서 실질적인 가중 요소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처분 기준 및 체계를 정비할 것. 여기까지 3개는 제도개선 요구 사항이고요.

4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회 결산심사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것, 이 부분은 주의로 제기되었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양청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1번부터 3번까지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4번, 결산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라는 부분 주의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첫 번째, 신동욱 위원님께서 KISA를 중심으로 중심으로 해 갖고 유출 신고를 일원화 하자는 취지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KISA가 유출 신고를 합동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체계가 마련돼 있고 지금 운영하고 있고 관련 제도를 앞으로 철저히 더 개선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 유출사고 신고가 많아지고 처리 건수가 누적되고 지금 미처리 건수가 누적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중대성에 따라 가지고 중대 사건들하고 경미 사건들을 분리해서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마련해서 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반복사고 관련해 갖고 감면을 제외한다거나 가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지금 유출 신고는 KISA에 일원화돼 있습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양청삼 예, 사이버 신고는 KISA로 들어오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유출 신고는 형식적으로는 위원회에서 받게끔 돼 있는데 시스템에 KISA 관련된 담당 직원들이 전부 접근 권한을 받아서 사실상 KISA에서 사이버 침해 신고하고 유출 신고를 통합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동욱 위원 KISA 직원들이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아이디를 발급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양청삼 예, 접근 권한도 저희들이 다 발급이 되어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들어와서 그걸 체크해서 자기들이 가져가는 겁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양청삼 맞습니다. 초기 접수 단계부터 KISA 직원들이 다 확인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런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물론 저희는 인터넷진흥원이라는 조직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일반인들은 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어떤 정황이 있을 때 신고를 어디에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측면이 있어서 이를테면 범죄 신고라든지 대국민 홍보나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KISA라는 게 경찰이나 검찰처럼 이렇게 익숙한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양청삼 그래도 사이버신고 118은 제법 홍보가 많이 돼서요.

○신동욱 위원 많이 돼 있습니까,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양청삼 벌써 12년 동안 통합해서 118 번호로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입이 일단 많이 되고 있고요. KISA가 지금 실질적으로 신고의 창구로서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더 살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면 신고 접수 외에 KISA하고 보호위원회는 어떤 업무 연계가 지금 돼 있습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양청삼 지금 상당히 많이 업무 연관성을 갖고 있는데요. 신고를 일단 KISA 쪽에서 접수하고 그리고 유출 신고에 대한 조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사된 기술 지원을 또 KISA가 하고요. 그리고 유출 신고 말고 여러 가지 열람요구에 대한 불응이라든지 목적 외 이용이라는 어떤 권리침해 신고센터를 또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업무 협조는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양청삼 지금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잘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마지막인가요?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예.

16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마지막 사업입니다.

개인정보 침해방지의 내역사업인 개인정보 조사정보통합시스템 기능개발·운영 사업에 대하여 첫째 개인정보 조사정보통합시스템이 조사의 단계별 관리에 필요한 핵심 정보의 입력이 누락되고 있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점과, 둘째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시 시스템 복구 이후에도 해당 기간 동안 처리된 사건에 대한 현행화 작업이 올해 6월까지 지연된 문제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시정요구(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사정보통합시스템이 사고조사 전 과정의 실질적인 관리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입력 항목의 충실성, 단계별 이력관리 여부, 통계·분석 기능의 활용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계획을 마련할 것이고, 두 번째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시스템 장애나 업무 공백 발생 시에도 자료가 적시에 복구·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 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임

니다.

유형은 둘 다 제도개선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양청삼 김현정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조정훈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강준현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제가 잠깐 짧게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강준현 예.

○조정훈 위원 양청삼 사무처장님, 개인정보 개보위와 관련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받았던 전체적인 이 12건 그리고 제가 봤던 결산서를 보면 개인정보위원회는 지금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너무 버거운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예산의 집행이 그냥 돈 쓰는 데 급급하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23년도 560억이던 예산이 24년도에는 650억이 되고 26년에는 750억, 730억, 거의 20%씩 매년 증가하는 이례적인 증가세입니다. 그리고 거의 100억씩 예산이 늘어나는 매우, 개인정보 관리가 중요하니까 계속 예산을 저희가 이렇게 매년 20%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것 지금 감당을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이 99.7이예요. 다 쓰신 거지요. 그건 맞는데 하나하나씩 들여다보면 아까도 인터넷진흥원에 급해서 돈 줬다, 그러니까 돈을 그냥 쳐 내는 데 급하신 거지 이 돈의 소위 가성비, 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싹 드러나게 개보위 때문에 대한민국 개인정보 관리가 좋아졌다는 인식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태 같아요.

개보위가 지금 한 4년 됐습니까, 5년 됐습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양청삼 지금 한 5년, 6년 차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제 좀 성과를 내야 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양청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제가 좀 부탁드리는 건 성과지표 있지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양청삼 예.

○조정훈 위원 그것 26년 것 제가 봤는데요, 25년 것.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채워서 내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27년도 예산 만드실 때 성과지표 제가 하나씩 하나씩 사업별로 다 볼 거거든요. 정말 각 사업별로 성과지표를 뭘 만드실지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셔서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양청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마무리하기 전에, 사무처장님이신가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양청삼 예.

○소위원장 강준현 혹시 개보위 인력 충원이 됐어요, 아니면 내년에 인력 충원 예정이
에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양청삼 지금 일부 인력 충원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추
가적으로 수시 증원 요청을 또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목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양청삼 목표는 지금 부처랑 협의 중이어서 지금……

○소위원장 강준현 나중에 관련해서 의원실에 보고 좀 해 주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양청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
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주의 3건, 제
도개선 17건으로 총 20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청삼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양청삼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반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강준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국무조정실 김영수 국무1차장님……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1차장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또 국무총리비서실 서은숙 정무실장과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셨습니
다.

곽현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심사자료 1쪽입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 대비 정부위원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한 데 대한 시정
요구안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내 정부위원의 참석률 향상 및 의결사

항 이행현황을 정기 관리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제도개선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2쪽입니다.

규제혁신추진단 운영입니다.

규제혁신추진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덩어리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1번 발굴과제의 이행률이 저조한 점과, 3쪽에 이어집니다. 2번 2025년 7월 존속기한 만료가 예산안 편성 당시 예측 가능했음에도 퇴거에 따른 원상복구 공사비를 정책연구비에서 전용하여 충당한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정요구로 먼저 덩어리 규제 관련해서는 1번 국무조정실은 덩어리 규제 개선과제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장기 미이행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이행을 적극 독려하는 등 조직 존폐와 관계없이 사후 관리가 중단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인데, 유형은 시정과 주의 두 가지 형태로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공사비 전용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은 향후 한시조직 운영 시에 해당 조직 폐지를 위한 소요예산을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는 내용의 주의 요구입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1번 시정과 주의 중 주의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번 주의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사업입니다.

연도 말에 무리하게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과업지시서의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문제 지적과 함께 시정요구안으로 국무조정실은 연도 말에 무리한 일정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해 연구결과가 제대로 도출되지 않았음에도 시정조치 없이 해당 결과보고서를 곧바로 검수해 완수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제도개선 요구가 제시되었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제도개선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연도 말에 무리하게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걸 인정하십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11월에 저희가 2건을 했습니다. 다소 좀 늦게 추진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올해는 그런 일이 없으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한 것도 꼼꼼하게 보려고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다음 사항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5쪽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사업입니다.

부패예방추진단이 정식 직제 편성 없이 훈령에 근거하여 기한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온 것에 대한 시정요구안입니다. 국무조정실은 부패예방추진단이 정식 직제 등 법적근거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이라는 내용의 시정 유형입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시정에 동의하고요.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서 내년 예산부터는 정식 직제로 예산 신청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위원 이게 지금 5년째 부패예방추진단의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라고 여야 할 것 없이 다섯 번 연속으로 지적당하기도 쉽지 않은데 법적근거가 이미 마련됐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사실 작년에 제가 올해는 반드시 하겠다고 그때 와서 약속을 드렸었고 행안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다 협의가 끝났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래서 정식 직제가 이미 생겼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직제로 내년 1월부터 출범하기로 해서 예산은 그렇게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정식 직제가 생겼다는 공식적인 자료,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추가의견 없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안 진행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이는 중앙부처·지자체의 모든 청년정책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인데, 1번 운영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하고 2번 통합플랫폼과 광역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플랫폼 간 자동 정보연계 서비스 구축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7쪽에 시정요구안입니다.

먼저 저조한 운영 실적과 관련한 2건으로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의 이용실적 회복 목표치를 제시하고 목표에 미달할 경우 사업 규모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의 제도개선 그리고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의 이용실적 저조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홍보 강화와 상담서비스 개선 등 플랫폼 이용률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인데,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지자체 플랫폼과 연계 문제에 대해서는 2번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내 청년정책 정보와의 연계 서비스를 구축할 것이라는 내용의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1-1번 제도개선에 동의하겠습니다.

1-2번은 시정과 제도개선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는 제도개선에 동의하겠습니다. 참고로 8월 31일 총리 주재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서 온통청년 고도화 발전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번 제도개선에 동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5개 지자체에 대해서 더 연결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 온통청년 계획 발표가 언제쯤인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8월 31일 날 청년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용만 위원 8월 30일쯤에?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김용만 위원 제가 시정을 요구를 했는데 제도개선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30일 날 내용을 보겠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전에라도 공유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공유를 해 주시고요. 추후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을 하셔서 가지고 좀 알려 주십시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별도로 의원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예.

○소위원장 강준현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시정요구 변경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청년정책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모르시지요? 1년에 우리가 지자체 기초·광역·중앙 다 해서, 공공기관·정부 다 해서 소위 청년을 위한 정책에 예산을 얼마 쓰고 있는지, GDP의 얼마를 쓰고 있는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느끼기에, 저는 정확하게 이거를 들어가 보지 않았습시다만 일단 수요자 중심의, 청년으로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이게 수요자 플랫폼인 거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뭐가 있고 공급자 입장에서 예산을 얼마를 지출하고 이런 정보도 이 플랫폼에서 수집이 됩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당연히 되고요. 지금 국민 AI와 또 연결을 해서 어느 시스템에서든 청년의 현 상황을 입력하면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가 있고 어디와 연결을 하고, 이런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조정훈 위원 그렇다면 연결을 함에 있어서 중앙과 지금 현재 16개의 광역자치단체 중에 9개는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김현정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그게 올해는 다 마무리가 된다는 겁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저희가 지금 추가로 5개 지자체하고 얘기를 해서……

○조정훈 위원 지금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이게 국고지원 사업이 아니고 지자체 자체 재원 사업이다 보니까 일부 지자체에서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것 정보 공유 아닙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도 안 해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저희가 같이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게 시스템이 굉장히 부분적으로만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초는 하나도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저희가 우선은 광역을 목표로……

○조정훈 위원 기초는 하나도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기초는 제가 지금 상황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구청, 구나 기초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그것은 실무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뭘 연결한 겁니까? 16개 광역단체 중에 7개 연결한 게 지금 21억 쓴 것의 성과입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자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자.

○국무조정실청년정책조정실 유호석 국무조정실 청년소통팀장입니다.

실장님 대신 말씀드리면 일단 서울 같은 경우는 몽땅청년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각 광역지자체마다 청년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 온통청년하고 연결시키면 청년이 온통청년에서 검색하면 지자체 사업까지 다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조정훈 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연결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년 사업을 안 하는 지자체는 없다고 제가 단언해요. 그렇지요?

○국무조정실청년정책조정실 유호석 예, 기초지자체……

○조정훈 위원 서울의 25개 구 다 있을 거고요, 경기도에도 다 있을 겁니다. 청년 사업 안 하는 기초단체가 있겠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플랫폼이 완전히 구축되면 사업과 예산 내용을 다 알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초와 광역을 모두 연결할 때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조정훈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25년이니까 26년이 끝나도 광역 16개도 안 되고 4개가 아직 남는 거지요?

○국무조정실청년정책조정실 유호석 예, 아직 4개 광역지자체가 남아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기초는 하나도 안 되고.

○국무조정실청년정책조정실 유호석 예, 기초는 아직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저희가 광역하고 추가로 얘기를 해서 광역에서 기초의 것을 다 모아서 광역과 우리가 연결되면 기초 것도 다 파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게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청년을 위해서 어디에 얼마를 쓰고 라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이 정보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텐데 언제쯤 완성 됩니까? 이것 담당은 총리실이 맞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조정훈 위원 언제쯤 그 정보 만들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제가 여기서 연도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데……

○조정훈 위원 이 사업 계획이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꼭 정보 구축하고……

담당자 말씀해 보시지요.

○국무조정실청년정책조정실 유호석 올해 말까지는 저희가 광역까지 다 연결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조정훈 위원 16개 다?

○국무조정실청년정책조정실 유호석 예, 지금 그렇게 계속 독려하고 있고 지자체에도 공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돈 문제가 아닌 거지요, 이것은?

○국무조정실청년정책조정실 유호석 예, 이게 지자체 재원 사업이어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기초는요?

○국무조정실청년정책조정실 유호석 기초는 아직 저희 온통청년 연계 대상은 아니지만 광역에 기초의 사업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광역이 연결되면 기초의 사업들도 팝업 형식으로……

○조정훈 위원 그런데 광역에 연결 안 된 기초 사업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 마포구 국회의원인데 마포구에서만 하는 것을 서울시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면 서울시한테 ‘25개 구에서 하는 것 다 알아 가지고 올려라’ 국무총리실에서 그렇게 지시하면 할까요? 안 하지요.

이것은 총리실에서 지금 정보를 모르는 거예요. 대한민국 청년정책에 지금 돈을 얼마나 쓰고 있는데 방향성도 모르고 효과도 검증이 안 되고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듯이 계속 돈만 쓰고 그래서 이것 정보 좀 모아 보자고 하는데, 이것은 좀 아쉽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저희가 내후년, 내년이라도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27년 예산 심의하실 때 27년까지는 못 하더라도 언제쯤 대한민국에서 기초든 광역이든 중앙이든 청년정책을 위한 예산이 얼마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실지 그 정보를 갖고 오실 수가 있으십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 정보를 같이 놓고 예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1-2 제도개선으로 하는 것을 동의하시는 거지요?

○조정훈 위원 예.

○소위원장 강준현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8쪽입니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운영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국민참여 기념사업 및 홍보사업을 직접 집행하기 위해 일반수용비 및 관리용역비 등의 비목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를 일반용역비로 세목 조정하여 용역을 발주하는 방식으로 집행하였는데 두 가지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1번 국회 예산심의권 훼손 및 저조한 실적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2번 이러한 집행 과정에서 특정 정당의 의견만을 반영하였으며 세목 조정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1번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은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무분별한 세목 조정 및 용역 일괄 전환 관행을 개선하고, 위원회 누장 출범 및 사전 기획 부실로 인한 대규모 불용 방지 대책 마련 및 일회성·외주 대행 위주 홍보 집행을 지양할 것’이라는 내용의 주의 의견이 있고, 2번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특정 정당 의견을 확대 해석하여 사업 집행 방식을 변경한 것은 국회 예산권한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담당자에 대해 징계조치할 것’이라는 내용의 징계 요구 의견입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1번은 주의로 동의하고요. 지금 자체 세목 조정은 규정 상은 가능하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징계를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의견은 1번과 2번을 합해서 주의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지금 문제가 세목 조정한 것 때문에 징계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답변……

여기에 적시된 대로 광복 80주년 행사라는 게 특정 정당의 행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국민 전체의 행사고……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신동욱 위원 이 부분에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의원실에?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저희가 다양한 의견을 다 최대한 수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신동욱 위원 노력을 했는데 국회에는 어떤 방식으로 의견 수렴을 했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국회에……

○신동욱 위원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반영하셨습니까?

집행 방식 변경의 근거로 여러 의원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하시는데 의원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셨는지……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의원실에 집행 방식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한 건 아닙니다.

○신동욱 위원 아니요, 지금 답변이……

이게 저희가 문제를 삼는 이유는 여러 의원실에 의견을 했는데 실제로 참고한 의원 질의를 나중에 자료 나온 걸 보면 국민의힘 의원의 의견을 참고한 게 없고요.

제가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있고 해서 다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보면 이전 정무위,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정무위에 없었습니다만 정무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러 가지 기념사업 홍보 예산을 줄여라든지 국민참여 촉진 캠페인을 삭감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하셔서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이게 보면 전부 다 민주당 의원님들의 의견만 반영하셨어요, 표를 보면.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지요. 담당자가 누구인데 이렇게 하셨어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저희가……

○신동욱 위원 아니, ‘저희가’가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저희가 통상적인 여당과의 협의 차원에서 행사 계획을 여당과……

○신동욱 위원 예산을 여당과만 짭니까?

이 예산이 잡힌 것은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 여야 의원들 전부의 의견이 집약되어서 짜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고 증액되고 한 것을 보면 장경태·박수현·문금주·이정문·이인영·이강일·김현정·김용만·김남근 등등 해서 예산이 전부 다 민주당 의원님들의 의견에만 따라서 예산이 조정됐다고요.

왜 국회 예산이, 그러면 다음에 예산 짜실 때도 민주당하고만 짜실 거예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저희가 예산을 늘리고 줄이고 이것에 관해서 여당과 협의한 게 아닙니다.

○신동욱 위원 아니, 협의가 아니면 그러면 이것은 뭘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행사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이러이런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신동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사 계획을 짜시는데 그 행사를 변경하시거나 할 때 왜 우리 당에는 의견을 안 물어보냐고요. 그 행사 예산을 짤 때 이미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여야가 합의해서 예산을 짰는데 그 행사의 예산을 변경하거나 축소하거나 다른 쪽으로 바꿀 때 그러면 이렇게 짰는데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 행사는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없애고 이걸로 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왜 의견이 전부 민주당 의원들 의견만 있냐고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위원님, 자꾸 예산과 여당 협의를 섞어서 말씀하시는데 예비비는 이미 다 편성이 된 상태였고요. 다만 우리가 행사 계획을 늦게 확정했습니다, 정부 출범이 중간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 차원의 협의였지 무슨 협의를 하면서 예산을 더 넣고 깎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동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아니, 저는……

○신동욱 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국무조정실은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을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게 추진하고 위원회 구성 및 세부 행사의 기획·집행계획이 확

정되는 대로 신속히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보고도 없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고,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세요? 이 행사 자체를 예산을 축소하고 증액하고 하는 과정에 전부 다 민주당 의원님들의 의견만 반영이 됐다니까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아니, 축소…… 이 예산 문제를 상의한 게 아닙니다. 예산은 이미 다 되어 있는 거고요.

○신동욱 위원 아니, 여기 있잖아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행사 계획이 5월 달에 나왔는데 행사……

○신동욱 위원 아니, 기념사업 홍보 예산 감액 의견, 국민참여 촉진 캠페인 예산 감액 의견,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왜 예산이…… 예산은 그 전에 잡혔겠지요. 그런데 그 예산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조정이 안 됐습니다. 다 최대한 원래 계획대로 집행하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김용만 위원 신 위원님, 저희도……

○신동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 예산을 처음 초기 예산을 짤 때는 여야가 다 같이 해서 짰는데 그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 의견들이 왜 민주당 의원님들이 질의한 것만 반영이 됐냐고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렇지 않은 것 확실해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김용만 위원 저도 잠깐……

○소위원장 강준현 잠깐만요, 순서를 좀 정할게요.

○김용만 위원 제가 신동욱 위원님께 동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의견도 드렸고 예산편성 때도 참여했고 지금 결산하는 과정까지 다 같이 하고 있는데요.

6월에 우리 정부가 출범했지요. 그렇지요? 그러고 나서 5월에 출범을 하고 난 다음에 6월쯤부터 실질적으로 이것 얘기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신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주당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에 있어서도 다 반영이 안 됐어요. 맞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러니까 그날, 그 기간 동안에 심지어 그 얘기를 의견을 듣고 수렴을 해 가셨지만 집행을 못 하신 거예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에 출범한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준비해야 될 사안이 많아서 불용액도 많은 거고, 지금 저도 지적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 것이 일반수 용비로 그 당시에는 국무조정실·총리실에서 직접 홍보를 하겠다, 참여를 하겠다와 같은 얘기들도 있으셨는데 결국은 다음 해 1월이 되자마자 전체 통째로 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루두루 의견을 받으셔야 되는 것도 일단 필요하다고 저는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 의견을 받았음에도 지금 이행을 못한 부분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받은 것도 지금 제대로 이행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어찌됐든 간에 미비점들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 생각에는 신동욱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을, 물론 그 당시에 예산편성하는 과정과 사업 기획에서 의견을 수렴하신 것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것도 제가 그 과정에 참여했으니까 아는데 지금 전반적으로는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저도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의 미비한 점도 있었다는 것에 있어서 만큼은 저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신동욱 위원 실제로 예산이 집행된 내역들을 보면요 처음에 잡혔을 때하고는 전혀 다르게 집행이 됐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잘 아시겠지만 5월에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 사실은 작년 하반기쯤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훈령이나 이런 것은 그 이전에 다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국정 상황이 있고 또 정부 대통령선거도 갑자기 시작이 됐고 해서 저희가 다음 정부 때까지 이것을 기다리자, 어쨌든 새로운 정부가 와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이게 위원회 출범 자체도 길게는 한 칠팔 개월 굉장히 늦어진 겁니다.

그리고 광복절이 8·15인데 거의 6월 이때쯤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여러 분께서 지적을 하시듯이 이게 사업도 급하게 해야 되니까 용역도 한 군데 몰아서.....

○신동욱 위원 그래서 한 군데 업체에다가 다 몰아 주신 거예요, 급해서? 한 업체, KPR이라는 업체를 통해서 전체 기념사업하고 기념사업 홍보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시간이 없어 가지고 한 업체에다가 다 몰아 주신 거예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구체적인 것은 필요하면 담당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담당자 설명 좀 해 보세요. 한 업체에 다 몰아 주신 이유가 뭐니까?

○김용만 위원 이게 24년 똑같은 내용인데요. 24년 11월에 보고를 하실 때는 직접 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그때는 우리 정부가 아니었지만. 그리고 나서 25년 1월에, 그때도 우리 정부가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원래는 일반수용비를 일반용역비로 전체 통짜배기로 용역을 했던 말이에요, 원래 직접 하기로 했던 것을. 그렇지요?

그 당시에 담당하셨던 분들 계세요? 이게 아마 담당자가 바뀌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아닐 때 있었던 일인 일이다 보니까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이게 짧게 하고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해체가 됐습니다. 백서까지 다 만들고 해체가 됐는데요.

○신동욱 위원 지금 결산심사기 때문에 KPR이라는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이런 것을 제가 따져 보지는 않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어떤 특정 업체에게 뭔가 편의를,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보통 그냥 툴기로 당신네들한테 다 주는 방식으로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존경하는 김용만 위원님 말씀처럼 직접 하겠다고 그랬다가 한 업체로

이렇게 다 몰아 준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그것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위원회도 다 종료가 됐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담당자하고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보고 좀……

○조정훈 위원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예, 짧게 해 주세요.

○조정훈 위원 김용만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세목조정하신 거잖아요? 정치적인 이슈가 있어서 늦게 써서 빨리 집행을 하느라고 세목조정을 해서 썼다 이 얘기지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그 상황까지는 이해가 되더라도 세목조정을 하시더라도 규정과 절차는 따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저희는 다 따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210-01에서 210-14로 바꾸고 여러 가지, 4개 이상의 세목조정을 하셨는데 실은 아마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국회예산정책처라는 곳이 있어요, 공수처라는 기관도 있고요.

그런데 똑같이 210-14에서 210-01로 세목조정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공수처에서 아주 그냥 이해…… 그러니까 오해 없이 명백하게 지적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 앞으로는 210-01에서 210-14로의 전용은 거의 모든 부처가 국회에 상의와 조율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것 민주당이든 뭐든 그런 절차가 없었고 집행의 편의를 위해서, 세목조정도 한가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 안에서 조정하는 것까지 저는 알아요. 그것까지는 제가 기술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런 내용, 집행의 편의를 위해서 세목을 조정하는 것은 그 의도가 불순하다고 보는 거예요, 국회예산처는.

따라서 그런 의도가 불순하기 때문에 야당이든 여당 위원들이 지금 이렇게 질의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수용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용만 위원 저도 제 나름대로도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업이어 가지고 제가 신경을 많이 썼는데, 사실은 저도 징계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격변의 시기였어요. 그리고 세목조정을 했던 시점도 아시겠지만 전 정권에서 잃었던 부분 때문에 일부러 제가 징계 요구를 안 했던 거거든요. 자꾸 그렇게 되면 또 정치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서 전 정권에서 있었던 사람을 또 찾아서 징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주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감안하셔 가지고 주의로 한번 조정을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신동욱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세목조정의 엄중함에 대해서 조정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늦게 와서, 지금 차관님이신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국무1차장입니다.

○신동욱 위원 아니, 지금 전혀 문제없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제 문해력으로는 특정

부분에 일부 문제가 있었으나 너무 급박했고 어찌고 이런 최소한의 해명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이게 5월·6월에 출범이 됐고 8·15가 거의 두 달 남은 상황에서 사업들을 추진해야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 차원에서 서둘러서 했던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잠깐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광복 80년……

○신동욱 위원 이것은 보류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소위원장 강준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관련해서는 별도의 시간에 추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신동욱 위원 예.

○소위원장 강준현 다음 사안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1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025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전액 예비비가 배정되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세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1번 예비비를 불용한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2번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대한 다수 의견이 나왔음에도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음, 3번 검찰개혁추진단이 임시조직의 훈령 개정을 통한 반복 연장 사례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등의 내용입니다.

각각에 대한 시정요구안은 11쪽에 있습니다.

1번은 국무조정실은 신규사업을 예비비로 추진하는 경우 재원 규모 산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적정 규모로 반영하고 예비비 집행 과정상의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주의, 제도개선 그리고 부대의견의 형태로 제시되었습니다.

2번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해당 연구용역의 발주 목적, 조사 결과의 보고·검토 및 정책 반영 과정, 조사 결과를 채택하지 않은 의사결정 경위와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여 연구 결과를 활용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용역을 발주·집행하였거나 그 결과를 고의로 배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자에 대해 징계조치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징계 요구 또는 감사원 감사 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3번 사항은 부대의견안으로 국무조정실은 활동기한 종료 후 조직을 존속·연장할 경우에는 훈령 개정만으로 반복 연장되어 온 다른 임시조직의 전례를 따르지 말고 연장의 사유·기한을 명시하여 국회에 사전 보고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1번 관련해서는 제도개선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3번 먼저 말씀드리면 부대의견 동의합니다.

2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연구용역을 인식조사하고 해외 사례연구를 했는데 이게 무슨 결론을 정해 놔다든지 일부러, 고의로 배제를 했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연구용역

이 아시다시피 정책수립 할 때 여러 가지 참고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을 어떤 예측이나 추측으로 해서 정계를 한다든지 감사를 한다든지 이것은 저희는 아닌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든지 그런 방법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결론적으로 검찰개혁추진단이 뭘 하셨습니까? 제대로 된 보고서 하나 내신 게 있나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필요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필요하면 별도로 보고…… 일단 제목이라도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지금 저희가……

○신동욱 위원 이게 지금 검찰을 없애겠다는 방침은, 답을 정해 놨다는 말씀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을 하시는데 그러면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을 없애는 방안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보고서를 내신 적이 있나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검찰개혁추진단에 자문위원회가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자문위원회는 양쪽 의견을 가진 분들이 다 참여를 해서 일부는 나가시기도 했고 일부는 또 남아서 의견 제시도 하셨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딱 무슨 형사소송법만 문제가 아니고 관련된 법령 다 하면 제가 알기로는 법이 한 백이삼십 개, 시행령만 해도 한 150개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 추진단에서 다 조정을 해서 해 나가야 되고 또……

○신동욱 위원 아니, 그런데 지난번에 국무조정실장께서도 실질적으로 이게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거의 사실상 시인을 하셨어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아니, 저는……

○신동욱 위원 그러니까 뭘 하셨다는 건지 저희가 지금 보고받은 게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저희는……

○신동욱 위원 오늘 대통령께서 경찰개혁위원회를 국무조정실에 만들라고 지시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정치적으로 뭘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저희가 문제를 삼는, 오늘 결산심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것 하고 싶으신 분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거면 괜찮은데 혈세가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신동욱 위원 그 혈세에 부응하는 만큼의 성과가 있었느냐를 질문드리는 거고 그런 것이 없었다면 경찰개혁위원회도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기도 그렇고 국무조정실의 검찰개혁위원회가 도대체 어떤 의견을, 어떤 보고서를 어떤 방식으로 냈는지 제가 전혀 아는 게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저희가 발표하고 한 자료들은 다 모아서 제출해 드리고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분명히 최선을 다했지만 그 성과

를 평가하는 것은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다고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검찰개혁 그게 핵심이지만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무실도 준비해야 되고 KICS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추진단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성과 없는 일을 하려고 사무실을 왜 얻냐고요, 혈세 써서?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아니, 그런 성과를 거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동욱 위원** 무슨 성과를 거뒀다고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그러니까 10월 2일 출범을 위해서 실무적인 준비를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가 합니까?

○**신동욱 위원** 전국의 중수청이나 공소청 사무실 얻고 하는 것을 국조실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다 했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저희가 초기 조정을 다 했습니다. 위치 같은 것도 저희가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KICS 설치하는 것도 저희가 매주 점검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신동욱 위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법사위에 있었는데 법사위에서 들은 얘기하고 또 사뭇, 너무 성과가 초기에 추진단에서 뭘 다 했더라는 말씀이 사뭇 달라서.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시다만 나중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저희 방에 꼭 정리하셔서 날짜별로 보고 좀 해 주시고 또 연구용역을 해서 그 용역이 나왔다면 어떤 내용의 용역이었는지 저희 방에 꼭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혹시?

○**조정훈 위원** 없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지금 정부 측이 시정요구한 2번 사항 관련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이 조치 유형을 어찌할지 결론 못 내리시는 거지요, 지금?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저희는……

○**조정훈 위원** 보류하시고.

○**소위원장 강준현** 그러실까요?

○**조정훈 위원** 예.

○**소위원장 강준현** 마찬가지로 검찰개혁추진단 운영 관련해서도 별도의 시간에 추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12쪽 부동산감독추진단 운영사업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부동산감독추진단 운영사업 신설을 위해 다른 세 부사업에서 5800만 원을 전용하였는데 두 가지 시정요구안이 있습니다.

첫째, 국무조정실은 국가재정법 제46조를 위반하여 예산 전용을 통해 사업을 신설한 관련자를 징계할 것이라는 징계 요구 의견이고.

둘째, 국무조정실은 예산 전용을 통해 사업을 신설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신규 행정조직 및 추진단 설치·운영을 위한 전용을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유형은 시정·주의·제도개선, 세 가지로 제시되었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1-1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용을 하면서 예산당국하고 충분히 실무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수용하기 곤란하겠습니다.

1-2번 관련해서는 시정, 주의, 제도개선이 있는데 저희가 주의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데 국무총리실에서 이렇게 법률적인 근거 없이 대통령이나 또는 정부의 결정으로 무슨 추진단을 만들어서 예산을 집행하고 계십니다.

그런 정치적 결정까지 제가 여기서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예산당국과 협의를 통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그 말씀은 예산당국도 법을 어겼다고 얘기하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 드린 대로 국가재정법 46조 이걸 예산당국도 지켜야 되는 법에는 ‘어느 하나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입니다. 예산당국이 하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실 리가 없었을 거고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이게 해당돼요. 2025년 예산을 검토하실 때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라는 건 없었어요. 있었으면 아이템을 라인을 따로 잡으셨겠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참고로 훈령이……

○조정훈 위원 잠깐, 지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이걸 아까 광복절 그 행사에 해당된다고 저는 보고요. 이렇게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계속해서 걸리세요. 이걸 절차를 좀 총리실에서 마련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또 무슨 단이 계속 나올 수도 있잖아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필요하면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런 식으로 계속 쓰고 나서 예산당국과 통했다, 그러면 국가재정법 46조는 무력화된다는 거예요. 예산당국과 협의하면 할 수 있다라고 고치시든지. 이거는 법을 위반하신 겁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저희가 실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도 예비비를 요청합니다, 하는데 이게 워낙 소액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예비비로 만들고 국무회의에 또 상정하고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좀 쓸 수 있는 예산을 우선 좀 소액이니까 쓰고 그런 식으로 예산당국이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정훈 위원 예, 맞아요. 소액이니까 쓸 수 있는 건 맞는데 그것도 같은 사업 또는 국회와 상의할 때 예산에 계상된 사업에 추가 지출이 필요할 경우에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더 이번에 좀 질이 나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예비비를 쓰는 것도 아니고 이 예산은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와 국무조정실 총액 기본경비 사업에서 지금 전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편하게 하려고 그 절차, 굳이 이런

거 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지금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 면에서……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산당국과도 얘기해서 더 필요하면 제도개선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제도개선은 미래 일이고요. 누군가는 이거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몇 번째입니까? 계속 총리실 일이잖아요. 그러면 총리실은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요청할 때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추진단을 위한 예산까지 반영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저희도 아시겠지만……

○조정훈 위원 예비비라는 거 왜 드려요, 저희가? 그러면 예비비를 드렸으면 그 예비비에 맞게 절차적으로 밟아 나갔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몇 주가 더 걸리겠어요, 몇 달이 더 걸리겠어요. 귀찮다고 이런 겁니다.

그 5800만 원 별거 아니라고, 쓰셨다고 주장하시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1억까지는 이렇게 해도 됩니까? 5억까지는 그래도 되는 겁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그래서 저희가 예산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이거는 국가재정법 46조의 위반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국가재정법 46조가 위반이 아니라고 하면…… 예산당국에 문서가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있는 국가재정법 46조와 훈령, 저 실은 다 알거든요. 없어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저희가 예산당국과 협의했기 때문에 그 필요하면……

○조정훈 위원 그 협의한 자료 있으십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조정훈 위원 저희 의원실에 보내 주십시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거 지금 보내 주시고 이거 보류해 놓고 그거 검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추가 의견 없으시지요?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심사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사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이어서 13쪽입니다.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사업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개원 50주년 기념사업 예산을 감액하였는데 조세심판원 기본경비사업에서 추가로 예산을 집행한 데에 대한 시정요구안입니다.

조세심판원은 헌법상 부여된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존중하고 국회에서 감액 조정된 사업과 관련해 예산을 확대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내용의 주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주의에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마지막으로 14쪽, 조세심판원(총괄) 사항입니다.

법정처리기한을 준수한 사건의 비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 평균 사건처리일수도 매년 길어지고 있는 데에 대한 시정요구안으로, 국무조정실 및 조세심판원은 실무조사인력 등 인력을 확충하고 업무 효율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건처리기간 단축 방안을 모색하여 법정기한 준수율을 제고할 것이라는 내용이고 유형은 시정, 주의, 제도개선 세 가지로 제시되었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류사업 등의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해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소관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 김영수 국무1차장께서는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잠깐 좌석 정비를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한데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강준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국무조정실 김영수 국무1차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장영현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구현우 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현우** 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1쪽입니다.

일반회계 경제·인문사회연구회(R&D) 관련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일부 연구기관은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도 일정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도 능률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지급 제한규정을 두지 아니한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무조정실은 정직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수와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도록 관련 지침을 조속히 정비하라는 내용으로 이강일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장영현 지적사항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구현우 다음, 2쪽입니다.

일반회계 경제·인문사회연구회(R&D) 사업입니다.

산업연구원 등 7개 기관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3.8%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연구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실시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안입니다.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장영현 지적사항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강준현 예.

○전문위원 구현우 다음, 3쪽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고령자고용법의 적용을 받는 출연연구기관들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사규정으로 인해 노사 간 60세 이상으로 하는 정년연장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출연연구기관들이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김현정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장영현 지적사항에 동의하고 연구기관들 의견은 수렴을 거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의한다는 게 바꾼다는 거지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장영현 예, 바꾸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연구기관 의견을 수렴해서……

○김현정 위원 아니, 바꾸는데 왜 의견은 다시 수렴하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장영현 전체회의 때 아마 이사장님께서 의견 수렴해서 진행하시는 걸로 말씀하셔서……

○김현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거는 지금 제도개선에 동의하셨잖아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장영현 예, 그렇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러면 바꾼다는 거잖아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장영현 그런데……

○김현정 위원 그러니까 의견 수렴하는 건 좋은데 바꾼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내용대

로 하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장영현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공공기관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회에서 독자적으로 바꿀 수는 없고 정부기관, 주로 재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연구원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여러 기관들이 의견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좀 더 낮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현정 위원 아니, 이것 지금 경인사연 내부규칙이라니까요. 어디랑 협의합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장영현 내부규칙이지만 저희들이 내부규칙 바꿀 때도 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김현정 위원 아니, 지금 이 규칙이 법을 위법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거기 밑의 26개 국책연구기관분들이 고령자고용법의 적용을 받아요. 아시지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장영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것 60세 이상으로 돼 있잖아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장영현 예, 60세 이상으로 돼 있고……

○김현정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60세로 일치해 가지고 그것보다 낮은 단계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장영현 이것은 공공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58세, 몇 세까지 등을 60으로 같이 정했던 겁니다.

○김현정 위원 아니, 이렇게 60세 일치라고 내부규정이 있는, 어디 정부기관에 이런 데가 있어요? 경인사연 말고 이런 데가 있어요, 이런 규정이 있는 데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장영현 그래서 그런 것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러면 이것 이렇게 동의한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답을. 이게 어떻게 동의하는 겁니까? 제도개선 한다고 했으면 60세 이상으로 법에 따라서 바꾸겠다는 답으로 저는 들리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답을 들으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장영현 바뀌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의견수렴도 하고 부처하고 협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김현정 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장영현 그리고 강준현 위원께서 저희들 65세로 연장하는 법안도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할 수 있는 여지도 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본인은 동의하시는 거지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장영현 예, 동의합니다.

○김현정 위원 믿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사무처장님이신가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장영현 사무총장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사무총장이시지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장영현 예.

○소위원장 강준현 지금 이강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다음에 김현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 동의, 동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니까 꼭 약속 지키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장영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그러면 또 하나 남았나요?

○전문위원 구현우 예, 4쪽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일반회계 한국교통연구원 관련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연구개발적립금은 연구 재투자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조성된 재원이나 이를 용인경전철 사업 관련 손해배상금 지급에 사용할 예정이라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 지적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과거 부산-김해경전철의 수요 예측도 담당한 바 있으며 실제 이용객은 예측치의 약 15%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입니다.

두 가지 시정요구안입니다.

첫 번째 안은 연구개발적립금을 손해배상금 등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용 요건을 명확히 하고 이번 배상금 지급이 기존 연구개발 재투자 계획에 미친 실질적 영향을 조사하여 국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시정사항입니다.

부산-김해경전철 등 과거 수요 예측을 담당한 다른 사업에 대한 배상 리스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라는 시정으로 김용만 위원님께서 첫 번째는 시정, 두 번째 안은 주의를 요구하셨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통연구원경영부원장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신희철입니다.

두 가지 다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동의합니다.

○김용만 위원 적극적으로 이렇게 동의하시는 건 좋은데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오늘 보면 정부 쪽에서 동의들은 잘하시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개선대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이게 대법원 판결이 25년에 났지요?

○한국교통연구원경영부원장 신희철 예.

○김용만 위원 그래서 지금 결정이 났는데 지금 후속 소송이 진행 중이지요, 그 규모를 42억보다 좀 적게 하려고?

○한국교통연구원경영부원장 신희철 예.

○김용만 위원 지금 일단 연구개발적립금은 재원이 충분한가요?

○한국교통연구원경영부원장 신희철 기존의 걸 말씀하시면 충분합니다.

○김용만 위원 42억 정도는 충당할 수 있다?

○한국교통연구원경영부원장 신희철 예.

○김용만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소를 위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한국교통연구원경영부원장 신희철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입니다.

○김용만 위원 보통은 이 연구개발적립금이 재원은 충분하다고 하는데 실은 이게 연구 재투자 목적으로 쓰여야 되는데 그런 연구재투자 과제들은 없나요?

○한국교통연구원경영부원장 신희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특별히 일회성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기관발전사업으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경인사연과 협의를 했습니다.

○김용만 위원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추계를 냄에 있어서 용인경전철도 그렇고 부산권도 그렇고 왜 이렇게 다 연구 결과가 안 맞나요?

○한국교통연구원경영부원장 신희철 부산권은 조금 상황이 다르고요. 예전에 저희들이 데이터와 기법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일어난 사건으로 지금은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일시적으로 그 2개의 케이스에서만 연구의 추계에 좀 오류가 있었다?

○한국교통연구원경영부원장 신희철 그 2개 케이스를 포함해서 20년 전, 30년 전에는 오류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지금은 훨씬 개선이 됐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한국교통연구원경영부원장 신희철 예.

○김용만 위원 지금 연 이자율이 어떻게 되지요, 42억에 대해서 이것 배상하지 않았을 때?

○한국교통연구원경영부원장 신희철 작년 9월까지 5%였고 지금은 12%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후속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까지도 이자가 다 먹여지는 거잖아요.

○한국교통연구원경영부원장 신희철 예.

○김용만 위원 그러면 지금 지급하는 것과 아니면—후속 소송의 승소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나중에 후속까지 진행하고 그 이후에 지급하는 것이 나은지에 대한 추계를 냈나요?

○한국교통연구원경영부원장 신희철 그 부분까지도 지금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협의를 한다는 건 아직 추계가 나오지 않았어요. 12%면 이게 제법 높은데……

○한국교통연구원경영부원장 신희철 그래서 용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한다는 것은 용인시가 배상금을 그냥 깎아 줄 건 아니고……

○한국교통연구원경영부원장 신희철 예.

○김용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쪽에서 연체이자율이 12%라는 것을 그냥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한국교통연구원경영부원장 신희철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법률전문가들 말에 의해서 공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그런 방법들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현 기준 총액 같은 것들도 지금 당연히 생각을 하셨겠지요?

○한국교통연구원경영부원장 신희철 예.

○김용만 위원 얼마예요?

○한국교통연구원경영부원장 신희철 그것에 대한 추계는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갖고 있는 금액으로 아직은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건 충분한데 지금 연 이자율을 반영했을 때 42억.....

○한국교통연구원경영부원장 신희철 이자율을 반영해서 아직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아무튼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지금 결정에 있어서도 절차적으로 문제없게끔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경영부원장 신희철 예.

○김용만 위원 그리고 지적을 했던 부산-김해경전철 이것 또한 지금 소송이 걸릴 가능성이 있나요?

○한국교통연구원경영부원장 신희철 저희는 굉장히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뭔가 만족스러운 답변은 아닌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담당자분이 한번 의원실 방문을 하셔서 가지고 저희가 관련 내용을 추적하고 들어 볼 수 있게끔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한국교통연구원경영부원장 신희철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소관의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소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시정 1건, 주의 1건 제도개선 3건으로 총 5건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소관의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 했지요?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국무조정실 소관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무조정실 김영수 국무1차장, 장영현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회를 한 15분 정도 해서 오후 3시에 속개하는 걸로, 지금 위원님들이 안 계셔 가지고.....

○김용만 위원 그래도 진행하시지요.

○소위원장 강준현 그런데 공정위 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분 동안 정회를 하고 오후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강준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 남동일 부위원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구현우 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현우 전문위원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과태료, 과징금, 가산금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과태료·과징금·가산금의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실적은 연례적으로 저조하고 고액·장기체납에 대하여 국세체납에 준하는 특별한 징수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수납실적을 반영한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액과 수납액 간 괴리를 줄이고 임의체납액 중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불납결손 처리 기준에 따라 정리하며 장기체납 규모의 감축목표와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박상혁 위원께서 시정을 요구하셨고, 가산금 징수율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고액·장기체납자는 관허사업의 제한 등 간접적인 제재 강화방안을 도입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김용만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지적하신 시정사항과 제도개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시정사항 중에 ‘장기체납 규모의 감축목표와 실적을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에서 저희 내년부터, 지금 현재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이 새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이 전체적으로 정부 내의 국세외수입을 통합으로 징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체계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 감축목표를 저희 공정위가 정하는 시스템은 아니라서, 저희가 장기체납 규모나 실적은 필요하실 때 국회에 보고드리는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목표 자체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체계는 아니라서 그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규 위원님.

○박민규 위원 제가 직전에 재경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법 사항을 알고 있거든요. 부위

원장님이 말씀 주신 게 타당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업무체계가 변화했고 부족한 부분들 다른 법상 국세청이 하기로 되어 있으니 부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존경하는 김용만 위원님.

○김용만 위원 시정 부분은 지금 박민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동의하고요. 보시면 과징금, 가산금 말고 과징금 쪽에서도 계속해서 장기 미납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제도개선을 하실 수 있나요? 어쨌든 지금 대통령님께서도 추심에 대한 의지가 강하신 거지 않습니까, 국세청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그렇습니다.

○김용만 위원 어떤 방식이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마찬가지로입니다. 과징금 부분도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에 따라서 국세청이 정부 전체적인 자원을 가지고 징수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김용만 위원 그러니까 기업 명단 공개 같은 것들도 지금 고민을 하시는 부분인가요,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 같은 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은 징수 자체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방안이 될 테고요. 임의채납이 장기채납 되는 업체에 대해서 따로 명단 공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따로 검토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김용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추가 의견 없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구현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채납 규모의 감축목표와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 이 부분만 제외하고 이대로 하는 결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예.

○전문위원 구현우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과태료, 과징금, 가산금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연초 미수채권 잔액을 분모로 하여 회수율과 대손율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연도말 미수채권 잔액을 총수납액을 나누어 최종적으로는 순자산이 913억 과소 계상되는 중대한 재무제표 오류를 초래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회계 기준에 부합하도록 대손충당금 산정방식을 즉각 정비하고 향후 결산 검증 절차를 철저히 개선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지적하신 사항 수용을 하고 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감사원에도 지적된 사항이라서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다음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구현우 3쪽입니다.

일반회계 과징금 항목입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감면하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니언시 관련해서 지적사항입니다.

기존 5년이던 감면 제한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해당 기간 내 다시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자진신고를 줄이는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과징금, 시정명령 등 행태적 조치만으로는 고질적 담합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로 제품 가격이 상승할 때 하도급 업체들은 가격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여 경영난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반복담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재점검하고 자진신고 유인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반복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기업분할이나 지분매각 등 구조적인 시정조치 도입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시정요구(안)입니다.

과징금 수입 일부를 활용하여 담합 피해구제기금을 신설하고 공정위 내 담합피해입증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손해배상 소송 시 입증책임 전환을 법제화하도록 노력하라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용하고 제도개선은 동의하겠습니다. 자진신고 관련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하고 또 한편 과징금을 상향하거나 신고포상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통해서 유인도 충분히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구조적 시정조치 도입과 관련해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제도개선 노력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구조적 조치의 경우에는 모든 위반 사업자들에게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시정명령이나 시정조치로 독과점 폐해가 해소되지 못하는 제한적인 경우에 보충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할 예정입니다.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없으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위원장님, 이것 세 번째 건 답을 못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그래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세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수용을 하고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다만 맨 마지막 지적사항 중에 ‘손해배상 소송 시에 입증책임 전환을 법제화하도록 노력할 것’ 시정 요구해 주셨는데요. 노력이라는 것을 권고 취지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런 방안을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이렇게 입증책임 전환은 전체적인 손해배상 법체계와 관련되는 거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신중하게 보겠다는 그 말씀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박민규 위원 방금 세 번째 건에 대한 위원장님의 말씀에 동의가 됩니다. 법체계상 상당히 가능성이 낮은 것을 명문화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충분히 동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구현우 그러면 말씀하신 ‘손해배상 소송 시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노력’ 이 부분만 제외하고 그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예.

○전문위원 구현우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정책연구개발 사업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단기간 수행되는 과제임에도 반복적인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및 단년도 회계주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말에 무리한 신규 과제의 착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서일준 위원님, 조정훈 위원님께서 시정을, 신동욱 위원님께서 주의를 요구하셨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수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구현우 시정인지 주의인지 말씀을……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죄송합니다. 저희는 주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재섭 위원님.

○김재섭 위원 시정 하시지요. 시정 하시면 좋잖아요.

마음은 시정인데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같은 주의로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구현우 주의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예.

○전문위원 구현우 다음, 5쪽입니다.

일반회계 대외활동 강화 부분입니다.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CP등급을 하락 조정한 사례가 발견되지 아니하여 CP등급의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처분이 확정된 중대한 법 위반 및 반복 위반 정보를 CP등급 조정 검토 절차에 신속히 연계하고 등급 조정의 요건·시점·절차와 공개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라는 내용의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용하고 제도개선에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현우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신고포상금 제도의 집행실적이 2년 연속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기존 홍보수단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홍보 매체·수단·시기 등을 개선하는 한편 신고 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고,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에 따라 대형 사건 발생 시 예상되는 포상금 지급 소요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포상금 지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용하고 제도개선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항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구현우 다음, 7쪽입니다.

일반회계 대·중소기업 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 추진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연동 사항이 계약에 미반영된 사유에 대하여 원사업자는 합의(예정)이 65.4%였으나 수급사업자는 제도 이해부족이 40.6%로 가장 높았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인식 차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컨설팅 및 익명신고를 확대하는 한편 미반영 합의 강요·분할 계약 등 원사업자의 탈법행위에 대한 유형을 구체화하고 하도급법상 금지행위로 명시하며 관련 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직권조사 및 제재조치를 적극 시행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용하고 제도개선에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구현우** 다음, 8쪽입니다.

대·중소기업 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 추진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사업비로 취득한 노트북에 대해 발주기관인 공정위는 자산의 귀속 주체를 확인하거나 계약 종료에 따른 인계·반납 또는 계속 사용 승인 여부 등에 대해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사업비로 취득한 자산의 소유권·관리책임·사용기간·처분절차를 사업지침과 협약서에 명시하고 정기적인 자산점검 체계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제도개선에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구현우** 9쪽입니다.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가맹점·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대리점의 서면 실태조사 응답률이 각각 38.8%, 37.7%, 35.6%로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서면 실태조사에 현장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응답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제도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구현우** 10쪽입니다.

선진소비자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지적사항입니다.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사업은 6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보안성 검토 결과에 따라 설계가 변경되고 추가 예산이 소요되어 전용을 통해 충당함에 따라 다른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는 재정운용상 비효율을 초래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먼저 공정위는 부실한 ISP 용역비 1억 1400만 원을 환수할 것이라는 변상 지적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와 관련해서 담당자를 징계하라는 징계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신규 정보화 사업 추진 시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준비하여 구축 단계에서의 계획 변경과 추가 재정 소요를 최소화하라는 주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백번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시정요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ISP 단계에서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 깊이 공감을 하지만 그 이후에 소프트웨어 구입비 관련된 사업 추진하면서 기재부와 다 협의를 해서 예산 전용이나 승인 절차를 거친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시정조치는 주의 정도의 조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섭 위원 일단 먼저 하나 여쭙볼게요.

처음에 민간클라우드를 설계하다가 나중에 G클라우드로 바뀐 건데 설계 단계에서 G클라우드로 바뀐다는 사실을 인지했거나 아니면 몰랐거나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시계열로 뭐가 우선인지 선후 관계를 정확하게 몰라 가지고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제가 파악하기로는 24년 2월에 당초 ISP 계획을 작성하고……

○김재섭 위원 24년 2월이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그때 예산이 1억 2000만 원 사업인데요. ISP 사업을 해서 3월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1억 1400만 원으로 했었고요. 그래서 ISP 수립 완료 보고까지 받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보안성 검토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클라우드를 안 되고 정부클라우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을 25년 1월 정도에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용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섭 위원 그러면 민간클라우드에서 G클라우드로 바뀐다는 사실을 24년 2월 설계 용역 당시에는 전혀 인지할 수 없었던 겁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그때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김재섭 위원 알 수도 없었던 거고요? 내지는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지. 왜냐하면 예를 들면 사전 고지가 됐다는지 아니면 정부 방침이 어느 정도 선 상황에서 이것을 애초에 민간클라우드 설계를 했다는 것은 상당한 과실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위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지난 일이지만 파악을 해 보니 아마 그 당시에 담당자들은 민간클라우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보면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한, 검토가 면밀하지 못했던 그런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부인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김재섭 위원** 그러면 실제로 G클라우드로 바뀐 건 25년이라 할지라도 24년 2월에는 충분히 예상은 가능했지만 공정위의 판단 미숙으로 인해서 예산이 소요됐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괜찮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저희가 더 면밀하게 꼼꼼하게 파악을 했으면 그것도 제대로 챙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재섭 위원** 반면에 법 개정도 아직 안 된 상태에서 막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지연이 된 상황도 있고, 이게 다소 준비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좀 미숙한 상태에서 예산을 쓴 느낌이 있습니다. 송언석 위원께서 변상, 징계 이렇게 강한 시정명령을 하신 것은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예산이 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최근에 국회본회의를 통과해서 법 개정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법 개정하는 데 다소 시일이 걸린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사실 상조 플랫폼을 구축하는 건데 상조 서비스를 받는, 주로 노약자나 소비자들이 많은데요. 그런 소비자들한테 자기 상조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단일한 청구에서 서비스하기 위해서 구축한 사업인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지난 정부도 그렇고 지금 정부도 그렇고 조금 더 중점 사업으로, 국정과제로 다 채택을 해서 민생 과제로 추진하다 보니까, 법 개정은 좀 더디긴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사업 속도를 내려고 했던 게 저희 집행부 입장이었습니다.

○**김재섭 위원**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주신 자료를 지금 봤는데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이 2019년 12월 31일부터 있었네요. 그러면 이것은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반영을 못 했다는 걸로 보이는데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면밀히 챙겨서 더 잘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담당자가 충분히 면밀한 검토를 기울이지 못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 사업 과정에서 고의였다든가 개인적인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든가 하는 그런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금 더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신동욱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강준현** 예.

○**신동욱 위원** 송언석 위원님이 기재부 출신이셔서 아마 이게 국고금 관리법을 위반한 거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게 고의는 아니라고, 그런데 고의 아닌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고의는 아니고요.

○**신동욱 위원** 아니, 고의지요. 고의인데 이 정도는 우리가…… 이게 상조회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일반 국민들의 편익에 부합한다 이런 거여서 법 개정은 될 거니까 먼저 하고 보자 이랬던 것은 고의 아니에요? 저는 그것 모르고 공무원이 이걸 했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그러면 수시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법 개정 자체는,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당연히 법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한 것은, 그 부분을 고의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다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신동욱 위원** 법이 없는데 모르고 했다면 그냥 실수인데 그 정도는 검토했을 것 같고, 왜냐하면 법 개정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송언석 위원님 안 계시지만 예산도 안 잡혔는데 이것 한 게 말이 되냐라는 포인트가 하나 있고 개인정보를 그렇게 민간클라우드를 만들어서 함부로 수집할 수 있게 하느냐라는 그 두 가지 문제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대단히 부주의했다, 어쨌든 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공무원이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뭘 했다 이 건 아닐지라도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법이라든지 시스템이라는 게 다 그런 것 때문에 만들어져 있는 건데 ‘내가 이것 하는 것이 좋다’ 그래 가지고 공무원들이 막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그렇습니다.

○**신동욱 위원** 통상적으로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계속 있긴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위원님, 저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사업을 할 때 어떤 경우는 법에 꼭 근거를 두고 하는 사업이 있고 어떤 경우는 예산 사업이라든가 일반적인 편익적인 사업은 법상 반드시 근거가 없어도, 물론 근거를 두면 사업이 더 탄탄하게 가니까 근거를 두는 건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 국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사업 자체는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법 개정은 어떤 측면이냐면 이게 상조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다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다루기 위해서는 법상 근거가 필요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전체 100%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중에서 일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이 개정된 거고요.

그래서 법에 근거 없는 그런 부분들은 사업을 계속 진행을 했고 법의 근거가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 보완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면 이게 본인이 한 겁니까? 내부 보고는 다 됐을 것 아니에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사업을 진행할 때 당연히 내부 보고도 하는데 이런 포인트, 정부 G클라우드를 해야 되는지 민간클라우드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담당자도 당연히 민간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한 거니까……

○**신동욱 위원** 그러니까 징계 요청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한 것은 이게 무슨 개인의 일탈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 정도는 재량행위에 속한다라고 판단하고 했기 때문에 징계하면 ‘나는 보고 다 하고 했는데’ 이런 내부 반발이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동의하기 곤란하다는 겁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그런 측면보다는요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실수가 없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전체적인 경중을 보면 이 건 담당자한테 변상이나 징계까지 할 사항은 아니지 않나 하는 게 저희 집행부 생각입니다. 그건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이것 이렇게 하시지요. 이 사안은 보류를 할게요.

○**김용만 위원** 제가 지금 김재섭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에도 좀 동의가 되는 것도 있고, 2019년에 민간 클라우드 운영과 관련된 가이드라인도 있었던 거고 예산 같은 경우는 24년 초쯤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25년 상반기인가요, 25년쯤 돼서 이게 G클라우드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을 건데 그 과정 어딘가쯤에서는 24년에서 25년으로 넘어올 때 25년 예산 안에다가 그 해당 부분을 반영할 수 있을 정도의 인지는 없었던 건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25년 예산을 편성하고 확정하는 단계에서는 이 부분을 아마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알았으면 당연히 저희가 25년 예산 할 때 이런 부분을 세웠을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만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요 우리가 시정요구 유형이나 분류 기준에 보면 주의가 있고 시정이 있습니다. 시정 같은 경우는 주의보다 윗 단계인 거지요. 윗 단계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 생각에 이것은 사업추진방식 변경에 해당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공정위 쪽에서는 동의를 주의에다가 받는 걸로 한다고 하지만 저는 송언석 위원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일부 공감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시정 정도로 우리가 좀 조정을 해 가지고 올려서 조치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혹시 의견들이 어떠신지 야당 위원님들 얘기를 듣고, 저는 공정위 쪽에도 주의 수준이 아니고 그것보다는 좀 높은 단계에서 시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떨지 한번 건의드립니다.

○**신동욱 위원** 제 생각은 이 자리에 안 계신 송언석 위원이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계속해서 나중에 하실 때 간사 간 말씀해서 결정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여기서 징계 요구한 것을 우리가……

○**김용만 위원** 저희가 실은 지금까지 좀 상위 단위에서 요구하신, 다른 위원님들이 계셨는데도 여기에 계신 우리 예결소위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지나간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송언석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 매번 그걸 여쭙보기는 좀 어려우니까 두 분께서 한번 상의를 해 봐 주시면 어떨까.

일단 뒤쪽으로 넘어가고요. 돌아와서 다시 한번 동의를 되신다면……

○**신동욱 위원** 예, 그러시지요. 지금 보류해서……

○**김용만 위원** 끝날 때쯤 다시 한번 더……

○**소위원장 강준현** 그러면 논의했다가 추가 심사하는 걸로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사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현우** 12쪽입니다.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025회계연도의 경우 2024회계연도 상담수당 부족분을 2025회계연도 예산으로 우선

지급하여야 했던 영향으로 연말 상담수당 일부를 다시 2026회계연도 예산으로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상담수당 지급방식을 상담 건수 기준이 아닌 상담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개선안을 고려하는 등 동일·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2027년 예산안 심사 대비 및 국회 협의를 진행하라는 주의와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시정요구안에 대해서는 주의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저 잠깐 한 가지 정도만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1372 콜센터,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건당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의 콜센터 접수 건들이 있으면 갑자기 그게 탁 쳐서 올라가는 거란 말입니다.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구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우리가 건으로 하지 않고 좀 넉넉한 수준에서, 예를 들어 시급 같은 형태로 운용을 하는 걸로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계신 건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시정 요구에 대해서는 주의 주셔도 저희가 제도개선은 함께 강구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해서, 이게 건별로 하다 보니까 갑자기 튀는 경우들이 있는 거니까 한번 그런 방식도 같이 고려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구현우 그러면 이 사항은 주의로 의결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주의로 하시고, 다음 사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구현우 13쪽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출연 관련입니다.

지적 사항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5년 12월 급여 및 임금 인상분 등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건비를 우선 집행한 후 12월 31일에 인건비 비목 간 총 4건 7억 9800만 원을 사후 전용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 요구 내용입니다.

소비자원은 월별 진행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연말에 과도한 전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을 보다 계획적으로 관리하라는 내용의 주의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지적 사항을 수용하고 시정 요구안에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현우 14쪽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출연 관련입니다.

지적 사항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동 기관의 설치 운영 근거법인 소비자기본법상의 업무 범위와 관련성이 낮은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 지원 사업에 1300만 원을 집행하였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시정 요구안입니다.

소비자원은 정부출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동 사업을 재설계하라는 내용으로 신동욱 위원님께서 주의를 요구하셨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지적 사항을 수용하고 시정 요구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구현우 다음, 15쪽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소비자원 출연 관련입니다.

지적 사항입니다.

2023년에서 2025년 연도별 피해구제 분쟁조정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30일 이내 처리율은 감소 추세에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소를 도모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시정 요구 내용입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분쟁조정 전담인력을 시급히 확충하고 AI 분류 및 신청서류 자동검증 시스템 도입을 조속히 완료하여 법정 기한 준수를 정상화하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지적 사항을 수용하고 제도개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구현우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등 12개 사업 관련입니다.

지적 사항입니다.

공정위는 2025회계연도에 419건에 걸쳐 총 약 1억 4000만 원의 여비를 전용 승인하는 등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집행하였습니다. 특히 UNCTAD 파견자의 귀·부임 관련 예산은 당초 확보된 예산의 두 배를 전용을 통해 집행하는 등 예산편성과 집행이

방만하게 이루어졌다는 지적입니다.

시정 요구 내용입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 해당 비목의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고 집행 단계에서도 잦은 전용이 발생하도록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무단 선집행은 엄중히 근절하라는 내용으로 조정훈 위원께서 시정을 신동욱 위원님·이강일 위원님께서 주의를 요구하셨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 요구에 대해서는 주의 의견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섭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 그냥……

○김재섭 위원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구현우 17쪽입니다.

기관운영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관련 사업입니다.

지적 사항입니다.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예산을 전용하여 공정위 지역사무소 예산을 충당하였고 동 사업의 예산은 꾸준히 불용이 발생하였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시정 요구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사업의 불용액 및 전용 등 예산을 고려하여 기관운영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예산은 감액하고 지역사무소 예산은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김용만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지적 사항 수용하고 제도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구현우 1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공정거래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지적 사항입니다.

인플루언서 제작 사업의 경우 유튜브 콘텐츠 212건, ‘공정한 패밀리G’ 드라마 등을 제작하였으나 실제 조회 수는 대부분 100에서 1000회 사이에 그치는 등 성과가 미비하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시정 요구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홍보의 성과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김용만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지적 사항을 수용하고 제도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어떻게, 어떻게 하실…… 이거 제가 작년 예산안 심사할 때도 지적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발상은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인플루언서들 통해 가지고 바이럴 마케팅을 좀 한번 써보겠다는 건데 실적이 잘 안 나요. 정말 획기적으로 뭔가 도전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아무튼…… 이런 형식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좀 어떻게 하실지.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는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성과가 나지 않아서 기획을 좀 다시 해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이 나중에 생기시면 한번 따로 보고해 주세요. 제가 이거 작년 예산안 심사할 때도 지적을 했던 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소위원장 강준현**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구현우** 위원장님, 아까 11페이지의 선진소비자정책 추진 관련해서, 선불식 플랫폼 구축사업 관련해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논의하신다고 하셨는데……

○**소위원장 강준현** 지금이요?

○**김용만 위원**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소위가 아니고 그러니까 변상……

○**소위원장 강준현** 그래요? 그러면 논의하시지요.

○**김용만 위원** 변상……

○**소위원장 강준현** 몇 페이지?

○**김용만 위원** 위원장님, 말씀……

○**소위원장 강준현** 11페이지?

○**전문위원 구현우** 예, 11페이지.

○**소위원장 강준현** 그러면 하시지요.

○**김용만 위원** 변상·징계에 있어서는 담당자에게도 좀 가혹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송언석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정도 수준에서 끝날 것은 아닐 것 같고 그렇다고 이 행정을 담당하셨던 공무원 분이 징계까지 있을 일도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의도가, 고의성이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다고 치면 공정위 쪽에서도 저는 시정으로 상위 조정을 해서, 한마디로 조치를 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떠십니까? 김재섭 위원님께서……

○**김재섭 위원** 그러니까 저도 뭔가 책임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의중을 확인해보니 송언석 위원께서는 아주 강경한 의지로 변상과 징계를 요청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결위에 가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니, 어차피 또 거기 가서 논의는 되겠습니까마는 결국에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고의였냐, 아니면 정말 심각한 부주의였냐, 아니면 사소한 부주의였냐 이런 건데 제 생각에는 한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주의는 확실히 있었던 것 같고 이거를 간단한…… 신경을 충분히 썼는데 이렇게, 민간 클라우드 방식을 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공정위도 일정한 책임을 져야 될 텐데.

글쎄요, 제 입장에서는 시정은 좀 낮은 것 같고 다른 것들이랑 균형을 해 봤을 때 예를 들면 징계가 어렵다면 변상 정도가 있다든지 변상이 어려우면 징계 정도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차피 다시 또 논의가 되겠지만 일단 저는 그 정도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이렇게 하시지요. 심사 결과 유형을 결론 짓기가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지금 안 돼요. 안 돼서 지금 결론이 나더라도 의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이따 추가로 별도의 시간에 재논의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사업 등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좀 대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이어서 국가보훈부 소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딱 정확히 5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강준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국가보훈부 강윤진 차관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류승우 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전문위원입니다.

국가보훈부 소관 검토할 사항 총 27건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일반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결산 실적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지 않고 과다하게 편성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내용입니다.

국가보훈부는 각 세입항목의 수납률 추이, 최근 5년간 수납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부대의견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부대의견안에 동의드립니다. 향후 정확한 세입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들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2페이지입니다.

상용임금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일반회계 26개 사업과 보훈기금 2개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상용임금 집행을 위한 별도의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였고 인건비 전반의 운영 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내용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상용임금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집행과 상용임금 근로자 운영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상용임금 집행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시정요구안에 동의드립니다. 향후 인건비 집행에 노력을 해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임의채납 중 국가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을 초과한 장기채납액이 30.3%를 차지하고 있어 국고 손실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내용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연도별 실제 수납액 규모나 수납률을 고려하여 정확한 세입예산을 계상하고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수납 실적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채납 관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부대의견을 요구하셨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부대의견안에 동의드립니다. 향후에도 과오급금 등등 회수 실적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4페이지입니다.

생활조정수당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025년도 예산편성 시 과거 증감률만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편성 인원 대비 실제 지급

인원이 2.4배에 이르는 추계의 오류를 범하였고 범정의무지출 사업의 제도 개편 사항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실 추계로 대규모 내역변경을 초래하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내용입니다.

국가보훈부는 대상자 특성과 제도 변화를 반영한 정밀 추계 모델을 구축하여 연례적인 대규모 초과 집행과 변칙 내역변경을 근절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시정요구안에 동의드립니다. 향후에도 제도개선을 잘 반영해서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5페이지입니다.

고엽제수당 및 고엽제환자검진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고엽제환자검진 사업에서 검진 실적이 부진하면서 고엽제수당 지급 대상인 고엽제후유 의증환자 인원이 저조하게 나타나게 되어 예산편성 당시 계획하였던 인원 미치지 못해 예산 집행이 부진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내용입니다.

국가보훈부는 검진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향후에는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검진 지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시정요구안에 동의드립니다. 향후에도 검진이나 신체검사 전담의를 확대해서 검진 기간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차관님, 잘하셔야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잘하시라고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검진요?

○소위원장 강준현 예.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다음, 6페이지입니다.

사망일시금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4년 연속 본예산이 연중에 바닥나 매년 전용이나 내역변경을 통해 부족분을 메우고 있

는데 추계가 가능한 데이터임에도 구조적으로 예산을 과소 편성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내용입니다.

국가보훈부는 보훈 대상자 사망자 수 추계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매년 본예산을 구조적으로 과소 편성하여 연례적으로 연말 전용·내역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주의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시정요구안에 동의드립니다.

참고로 22년도·23년도에는 코로나 등으로 사망자들이 많아서 전용을 했는데 25년도부터는 안정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추계가 일부……

의견 드러도 되나요?

○소위원장 강준현 예.

○김용만 위원 추계가 조금 더 정확성이 올라간 건 맞지만 안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쓴다고 하면 분명히 추계에 있어 가지고서는 정확도가 올라갈 수 있을 건데…… 그러니까 아직 ‘안정적’이라는 표현에 있어서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반드시 추계 정확도가 좀 더 올라갈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7페이지입니다.

보훈심사위원회운영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행정소송 처리 결과 패소율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증가한 패소 비용이 지급되고 있는데 법원의 법해석 및 판단과 보훈심사위원회의 판단 기준이 지속적으로 괴리되는 경우 불필요한 법률쟁송과 국가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내용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주요 쟁점으로 반복되는 법원의 판결을 보훈심사위원회 심사 기준 및 심의에 참고하는 등 심사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시정요구안에 동의드립니다.

참고로 패소 사유를 분석해서 심사기준도 개선하고 현재는 소송지침을 바꿔서 기계적인 상소가 되지 않도록 상소심의협의제도 구성하는 등 제도개선을 한 바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추가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8페이지입니다.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국가보훈부는 국회 지적에도 불구하고 IC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이 전체 교체 대상자 대비 48%에 불과하여 발급률이 저조한 상황이고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률 제고를 위해 대리발급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대리발급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내용입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등록증 미발급자의 사유를 분석하고 거동불편자 대리발급 현황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며 보훈 대상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시정요구안에 동의드립니다.

참고로 신분증이 28년도까지 유효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까지도 한 55%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업무지침을 새로 바꿔서 우편수령도 가능하게 하고 대리발급도 가능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이것 제가 25년 결산 때 지적했던 내용이고 대리발급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지금과 같이 답변을 주셨었던 내용이에요. 맞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맞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런데 따로 그 실적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됐었던 겁니다. 이것은 지금 작년이랑 똑같은 말씀을 다시 주신 것인데 반드시 추진을 해 주십시오. 이게 큰 도움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관님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이번만큼은 반드시 대리발급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의 또 다른 제도 활성화에 있어 가지고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청별로 대리발급 현황을 분석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소위원장 강준현 추가 의견 없으시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9페이지입니다.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두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 지연 지자체에 대한 페널티 규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하였고 두 번째, 지자체 사전 준비 부족으로 인한 사업 포기 및 이월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안입니다.

첫 번째 사안에 대해서 국가보훈부는 지방보훈회관건립사업 지침상 3년 신청 제한과 같은 무의미한 페널티 조항을 즉각 폐지하고 지자체 사전 요건 강화 등 실효성이 있는 사업 관리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시정을 요구하셨고.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국가보훈부는 국회의 반복된 지적에도 실효성 없는 지침을 펴

계로 지자체의 공사 지연과 예산 이월을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주의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주의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두 가지 시정요구안이 있는데 저희는 주의로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방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 지침을 개정해서 여기 지적해 주신 3개에 대해서는 현재 모두 집행 완료를 했고 특히 25년도에는 건립을 포기한 곳이 없을 정도로 나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김용만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페널티 조항을 폐지해 달라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걸 좀 낮추기 위해서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 페널티를 최소한 두어야지 건립 포기 등이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페널티 조항은 그냥 두는 것으로, 그게 24년도에 바뀐기 때문에 그냥 하면서 다만 저희가 이렇게 지적되는 것들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즉슨, 예를 들어 지금까지 사업을 포기했던 사례가 많이 있나요, 지방보훈회관을 만들지 않고?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건립 포기가 22년도에, 한 2개 2개 2개씩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되려면 지자체에서 먼저 땅도 있어야 되고 뭔가 사업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나름 저희는 기준을 세우는데 이게 정부 단계에서 들어오거나 국회 단계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포기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포기로 들어온 경우에 3년 정도 추가 신청이 어렵도록 이렇게 지침을 바꿔 놓았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신청한 걸로 하여금 진행이 되다가 포기하는 사례들을 방지코자 해서 3년 동안 못 하게 한다라는 건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보훈회관이라는 것을 건립함에 있어서 포기를 안 하게끔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임하게끔 하는 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외에 추가로 페널티가 생겨야 된다고 하면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은 저는 맞는 것 같거든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저희가 지금 매년도에 신청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07년도부터 한 112개소는 보훈회관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부 차원에서 10개 이상의 신청서를 받아서 나름 그 기준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없어서 못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지 무분별하게 신청하지 않고 나름대로 보훈처 자체 내에서는 순위를 매기고 있다.

○김용만 위원 제 얘기는 신청은 해 놓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포기를 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도 있는데 본인들이 포기를 하지 않는 선에서 미온적으로 응하면서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3년 동안 제한하는 걸로는 다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3년 제한 플러스알파가 있어야만 본인

들이 포기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안 하는 사업들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뭔가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지침을 좀 더 개선하라, 이런 제도개선으로 저희가 받으면 될까요, 그러면? 지금은……

○**김용만 위원** 그렇게 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동의를 할 테니까요 좀 더 실용성 있는, 보훈회관 건립을 적극적으로 지자체가 받아 가지고 추진시키는 것까지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 제가 지금 주신 의견까지 이해를 했고요. 동의하도록 하겠으니, 단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대의견을 좀 달아 가지고 어찌 됐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자체들이 임할 수 있게끔 하는 추가 보완 조치를 더한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알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그러면 어떻게 합의를 보신 거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그러면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받아서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제도개선 하고 부대의견 다는 걸로.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소위원장 강준현** 전문위원님, 이해하셨지요?

○**전문위원 류승우** 예.

○**소위원장 강준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10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시설이용지원 사업입니다.

두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내버스 이용지원 사업은 사업수행자의 대납액을 모두 정산하지 못해 다음 연도로 지급이 미루어졌다는 지적이 있었고, 두 번째 교통시설이용지원 사업은 예산 확보 및 미지급금 해소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안입니다.

첫 번째 사안에 대해서 국가보훈부는 시내버스 이용실적에 따른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미지급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주의 또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고, 두 번째 사안에 대해서 국가보훈부는 기획예산처와 즉각 협의하여 2026년 발생한 미지급금을 조속히 정산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시정요구안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는 주의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23년도, 24년도에 미지급액이 꽤 많이 발생했었고 그것은 26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7년도 예산안에도 실은 25년도 미지급금 등을 많이 반영하도록 재정 당국과 협조를 드려서 미지급금은 많이 줄여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현재 25년도는 누적 미지급금이 156억으로 나와 있는데 26년도에는 28억으로 줄었고 내년도에도 계속 줄여 나가도록 재정 당국과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김용만 위원님.

○김용만 위원 그러니까 주의로 받아 가신다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보훈부가 아니고 예산처에서 협조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이렇게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서……

○김용만 위원 우리가 그전 것까지는 26년에 한번 털긴 했지만 지금 우리가, 26년 6월이었나요? 제가 정확히 시점은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미지급금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누적이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털었던 것의 3분의 1 정도가 26년에 확인을 해 보니까 다시 쌓여 있던데.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그래서 27년도 올해 예산에는 많이 반영을 해 났고요. 다만 26년도 미지급금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한 사십몇억 정도. 그래서 그것은 또 예산 당국과 좀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이게 지금 지급 근거가 법적으로 없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시내버스는……

○김용만 위원 우리가 예산처에서 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확실하게 명시하기 위해 내용을 보니까 이게 지금 현 기준에는 권고 수준이고 지급하는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처가 지금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훈처가 여기서 주리라든가 것을 받아 간다 하더라도 사실 실질적으로 예산처의 협조를 구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해서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다음 연도에 예산처한테 한마디로 정말 부탁을 부탁을 해 가지고 일부 받아 가지고 처리하고 받아서 처리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실은 버스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러니까요. 수준을 주의로 받아 가신다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요 예산처랑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저도 같이 지원을 해 드릴 테니까요.

자꾸 어찌 됐든 우리가 이 시내버스 교통 지원금을 드릴 건데 자꾸 미지급금으로, 한마디로 신용카드사 걸고서는 지금 먼저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맞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러니까 신용카드사 입장에서는 자꾸 미지급금이 발생이 되는 거니까, 수금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예산처에다가 확실하게 그 해당 예산에 대해서 좀 확보를 받을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자꾸 사후 정산 개념으로 진행이 되니까.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실은 시내버스가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지 나중에 고속버스, 시외버스까지도 같이 해결이 되는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러니까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그리고 이것 말고도 또 지하철도 있고 뭐 이래서……

○김용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의를 받으신다고……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제도개선을 저희가 했을 때 또 이게 기재부까지……

○**김용만 위원** 그러니까 이것 주의 말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보훈부, 기획예산처 즉각 협의해서 26년 발생한 미지급금 조속히 정산, 이것은 시정으로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이것 하나만 하는 걸로 하는 대신에 진짜 예산처랑 얘기해 가지고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시내버스마저도 미지급금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다양한 교통 편의를 제공해 드리려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그러면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재부랑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아니, 시정으로 한다는 걸 왜 제도개선으로 갑자기 또……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시정으로 받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하고 그 위에 있는 1번, 그러니까 10번에 1과 2가 있지 않습니까? 1번은 없는 걸로 할 테니까요. 예산처와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확보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도록 할 거고 2번은 시정으로 받으시는 걸로.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정리되었지요?

○**전문위원 류승우** 예, 1번은 삭제하고 2번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시정으로.

추가 의견 없으시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11페이지입니다.

보훈병원 진료 및 위탁병원 진료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비는 진료인원과 단가의 과소 추계 등으로 예산 부족과 이·전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진료비 부족 및 미지급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진료비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회계연도 독립 원칙을 준수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시정 또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세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선택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진료비에 대해서도 실은 그간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저희가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는 보상금 같은 것을 계속 전용을 했었고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했는데 올해는 또 예산을 당국과 잘 협의해서 실은 좀 많이 반영을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개선보다는 주의로 조정해 주실 것을 희망드립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제도개선보다 주의로?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주의.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바꿀 것은 없고 향후 예산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차관님,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개선할 게 없다 하더라도 주의를 받는 것

보다는 제도개선으로 받아 가시는 게 나을 건데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강준현 그럴 것 같은데, 나도.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받아 가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차관님께 좀 그 말씀을……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12페이지입니다.

제대군인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제 진료비 소요에 비해 예산이 과소 편성되는 등 예산 추계의 정확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실제 진료인원과 진료단가를 반영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다른 사업에서 이·전용 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시정 또는 주의 또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저희는 시정요구유형 중에서 제도개선을 희망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아까 보훈병원이랑 위탁병원이랑 또 제대군인의 의료 지원이랑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제대군인 의료 지원은 보훈병원 진료나 위탁병원처럼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늘 이게 예산이 부족했는데, 실은 이게 이렇게 상해를 입고 등급이 미달이 나오신 부상 군인들에 대한 그런 보상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에서도 의무지출로 되어 있지 않고 재량지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 당국과 협의하는데 늘 예산이 부족하고 이래서 이것은 나중에 보훈병원 진료랑 위탁병원이랑 통합하는 것도 가능하고 법률로써 의무지출로 하는 것도 건의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도개선으로 조 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들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13페이지입니다.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두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동 사업은 국회가 사업 목적을 명확히 지정하여 증액한 신규 시설투자 사업임에도 2025년 예산의 93.3%를 다른 사업에 부적절하게 전용하였다는 지적이 있었고, 두 번째 동 사업은 준공 시점도 2027년 3월에서 28년 6월로 연기되는 등 사업관리가 미흡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안입니다.

첫 번째 사안에 대해서 국가보훈부는 국회가 목적을 지정하여 증액한 시설사업 예산을

타 사업 경상경비 전용 행위를 중단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시정을 요구하셨고, 두 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는 사업이 재차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예산 편성 및 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주의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정부 측에 시정요구안 1·2안 둘 다 주의를 희망드립니다.

실은 대구보훈병원은 거기가 뒤에 암반도 나타나고 해서 통합 공사비 절감 방안으로 조금 중간 설계가 그간 지연되긴 했는데 현재 26년 5월 기준으로 착공을 시작했고 또 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렇게 지연되지 않도록 예산을 잘 감독·공정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의견 좀……

○소위원장 강준현 예.

○김용만 위원 그 부분은 좋고요.

근데 지금 보면 25년 12월 22일에 연내에 공사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기가 어려운 것인데 보훈부가 보훈공단에 3억 원 보조금 지급했잖아요. 이것은 행정적으로 사실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뻔히 알잖아요. 우리가 연내에 그 비용에 있어 가지고 지급하면 시간을 일주일 남겨 놓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좀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그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상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렇게 경비를, 원래는 좀 하는데 규정상 지금 3억 정도는 차년도로 할 수 있어 가지고……

○김용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22일 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렇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그래도 그 당시 12월에 입찰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좀 그만해도 되는데 이게 연중 사업이기 때문에……

○김용만 위원 그러니까 12월에 입찰이 진행 중에 있었다는 것 또한 보면 이게 당시 회계연도에 집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공무원 의식 같은 것들을 반영했을 때도 사실 정확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주의로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행정적으로 집행을 하실 때 이렇게 당연히 지적사항이 나올 것들인 것을 아시면 웬만하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향후 면밀히 검토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조치 유형 관련해서는 주의로 하시는 거지요?

○김용만 위원 예.

○소위원장 강준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14페이지 되겠습니다.

현충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독립의 전당 사업은 인허가 요건이 까다로워 계획대로 실시가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예산을 관행대로 편성했다는 면에서 부적절한 예산 편성에 해당한다는 지적입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유형의 시정요구가 있습니다.

먼저 국가보훈부는 독립의 전당 조성 사업의 추진계획 및 공사기간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관련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추진 가능성에 따른 적정 공사비 금액을 산정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시정을 요구하셨고, 다음으로 국가보훈부는 공사예산 편성 시 착공 선행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실제 집행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주의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부는 독립의 전당 조성 사업의 추진계획 및 공사기간을 면밀히 점검하고 서울시의 원활한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향후 공사예산 편성 시 착공 사전 절차 이행 현황과 예상 공정률을 면밀히 점검하여 적정 예산을 반영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세 가지 시정요구를 주셨는데 첫 번째 시정에 대해서는 주의로 조금 조정해 주실 것을 희망드립니다. 실은 저희가 독립의 전당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데 이게 애초에 독립의 전당이라는 곳이 독립관 순국선열 위패를 모시는 곳이었었는데 그게 사적지고 공원이자 보니까 사적지를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를 받고 또 공원을, 위원회를 할 때 지상에 있는 것을 지하로 다시 내리라는 심의·의결이 나오고 또 그러다 보면 다시 문화유산 변경을 하다 보니까 꽤 오랜 시간 위원회를 하면서 많이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26년 6월에 해체공사를 완료했고 지금 표본·시굴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15페이지입니다.

독립운동관련사업등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내역사업을 예산 전용을 통해 집행하였고 별도 공모절차 없이 광복회를 동 사업의 단일보조사업자로 지정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국가보훈부는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다른 사업 예산의 전용을 통해 집행하는 것에 신중을 기하고 향후 반복되는 10주기 기념사업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 방식과 관련하여 자의적으로 요건을 해석하는 것을 지양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주의 또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시정요구(안)에 동의드립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위원장님, 이것은 주의나 제도개선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그래요?

지금 뭐라고 말하셨지요?

○박민규 위원 잘못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시정……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제도개선……

○소위원장 강준현 지금 밑의 것인가요?

○전문위원 류승우 15페이지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제도개선?

○박민규 위원 제도개선으로 답변하신 겁니다.

○신동욱 위원 저도, 제도개선으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강준현 예.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16페이지입니다.

독립유공자등발굴포상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동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참전유공자 역사찾기 사업은 사전 준비 부족으로 위탁 집행 예산 전액을 불용하는 등 사업 추진이 부진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사전조사 및 검토를 보다 면밀히 수행함으로써 이행 가능한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시정요구(안)에 동의드립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섭 위원 저는 하나 말씀드릴 게 제가 이것 지난 국감 때 한번 지적했던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특정인에게 예산이 집중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분이 반복적으로 이 발굴사업을 수행하면서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중국에 계신 분이었고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이 사업은 그 사업이 아닙니다.

○김재섭 위원 다른 사업입니까?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김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이었지요, 그 당시에? 유공자발굴 사업은 맞……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그것은 독립유공자 사료 발굴이었습니다.

○김재섭 위원 사료 발굴과 발굴·포상은 다른 사업입니까?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이것은 참전유공자에 관련된 것이고 그것은 독립유공자입니다.

○김재섭 위원 위에 독립유공자발굴포상 있는데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그 사업 밑의 내역으로 참전유공자의 공훈록 관련된 것입니다. 다른 사업입니다.

○김재섭 위원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논의되어야 되는 거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김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17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사업입니다.

저적사항입니다.

동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묘비제작비 및 안장시설 사용료 지급 사업은 계획 측면에서 과다 추계하고 집행 측면에서 안내 부족 등으로 예산 집행이 부진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지원 대상 인원을 재산정하여 과다 추계를 해소하는 한편 제도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유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에 대한 안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시정요구(안)에 동의드립니다. 향후 미지원자가 나오지 않도록 복지부의 장사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18페이지입니다.

국립서울현충원 사업입니다.

저적사항입니다.

국립서울현충원 시설보수비는 시급성을 이유로 제2회 추경에서 12억 5000만 원을 증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산 집행이 부진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국가보훈부는 향후 통상적인 시설보수는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하고 추경예산의 목적 외 이용 및 불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집행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주의 또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향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저희가 실은 추정 같은 것은, 원래 본예산에 써야 되는데 그 당시 현충문이 많이, 외국 귀빈들도 오시는 현충문 앞의 바닥도 균열이 났고 또 현충관도 물이 새고 1층혼당도 20년 이상, 엘리베이터가 망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제도개선보다는 주의로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위원장님, 저 잠깐……

○**소위원장 강준현** 신동욱 위원님.

○**신동욱 위원** 신동욱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로 전용하는 예산의 규모가 일회성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못 하고 이렇게 다른 불용 예산, 말하자면 다른 예산을 과다, 반대로 보면 다른 데 예산을 많이 잡아 가지고 이것을 인건비로 전용하는 게 구조적인 문제면 좀 심각한 것 아닌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위원님, 뒤에 21번의 인건비 내용이 따로 나오는데요.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신동욱 위원** 이게 현충원 인건비도 거기에 포함돼서 지금……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여러 가지 포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인건비라는 것은 예산을 딸 적에 정원 대비로 인건을 받는데 저희가 예를 들면 근속승진의 문제도 있고 또 9급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들어 왔다가 지자체로 가기도 하고 민간으로 가기도 해서 처음 공무원을 받을 때 정원보다는 많이 인력안을 받아 놓습니다.

그런데 매년 공무원에 계속 안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가 하면 다른 데로 이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비용을, 저희가 지청이 26개 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을 합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부족했는데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신동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그냥 대답은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는데 구조적 문제를……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구조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많이 들어왔다가 옹기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인건비가 부족한 상황이 생긴다는 말씀이신데……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실은 어느 부처나……

○**신동욱 위원** 제도 자체를 완전히 손보지 않는 이상 이렇게 예산 문제를 불안정하게 둘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게?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어느 부처나 인건비 이용·전용이 있겠지만 좀 더 면밀하게 보도록 하고 실은 저희가……

○**신동욱 위원** 전체 비중에서 너무 커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숫자가.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그때 25년도에는 저희가 한 40억 정도 이용·전용이 있었는데요. 이게 예산을 쓸 것을 이용한다기보다는 연말에 불용이 되거나 이런 것을 잘 준비를 해서 쓸 것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로 전용하는 일은 없도록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것은 안 됩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그것은……

○**신동욱 위원** 당연히, 마땅히 써야 되는 것을 인건비 문제 때문에 그것을 쓰지 않고 아꼈다가 인건비로 쓰시면 안 되고……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그렇게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이것을 하여튼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충분히 설득을 좀 해서 예산에 반영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다음 사항으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사업입니다.

두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직지원금은 법정 의무지출임에도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되었다는 지적과 두 번째, 구직급여 대비 지급단가 및 기간이 불리하여 제대군인 예우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 국가보훈부는 예산 조기 소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전용 관행이 계속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내용의 주의를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계셨고 또한 국가보훈부는 전직지원금 지급 대상자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한 위원님들이 계셨습니다.

두 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는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원 수준이 구직급여에 비하여 낮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주의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계셨고 또한 국가보훈부는 전직지원금 월 지급단가를 법정 한도인 구직급여 월 상한액의 50%까지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구직급여와 동일하게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계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보훈부는 시정요구(안) 중에 제도개선을 희망드립니다. 실은 이 전직지원금은 아까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구직급여 상한액의 50%까지 받으면 탁 좋은데 법에는 50% 이내에서 받도록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다 못 드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당국과도 잘 협의를 해서 최소한 구직급여의 50%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왜 3년 연속 팔구 월에 조기 소진이 되고 이·전용으로 하여금 메꾸게 된 거예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재정당국과 협의가 충분히 안 돼서, 인원도 늘어나고 이런 것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27년도 예산에는 인원에 대비해서는 할 수 있을 정도로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지금 봐 보면 최근 게 136억이 필요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3년 동안 증액한 것은 아주 한 자리 단위 수로 했던 말이에요, 두 자리 단위 수로 늘어나고 있는

수요에 맞추지 못하고.

지금 얘기하신 27년 예산을 제가 아직 내용을 못 봤는데 그러면 아주 획기적인 수준으로 이것을 증액했다는 건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올해는 실은 인원 증가분 정도는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구직급여의 50% 정도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실은 현재도 그게 50%가 안 되고 있고 중장기에 따라서 조금 그게 미흡해서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중기는 원래 50%가 목표라면 현재 한 29.3%, 장기는 한 40.9%여서 실은……

○김용만 위원 저는 다른 부분에서는 차관님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조정을 다 해 드렸는데 이 부분은 3년 동안 계속해서 조기 소진되고 이·전용을 해 와야만 했던 것 때문에, 분명히 예산처에다가 충분히 상황을 얘기하고 추진을 해서 확보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3년 연속 이·전용이 발생하고 조기 집행됐다는 부분에서는 주의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제도개선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제도개선이 아니고 저는 주의·제도개선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주의로 하시지요, 주의·제도개선.

○소위원장 강준현 수용하신 거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소위원장 강준현 알겠습니다.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그러면 위원장님, 1번은 주의 하고 2번은 제도개선 그렇게……

○소위원장 강준현 맞지요? 맞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참전기념행사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행사대행 수수료율 인하 등 예산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참석자 만족도조사 결과 양질의 콘텐츠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국가보훈부는 행사대행 계약 체결 시 경쟁입찰, 원가 검증을 통하여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참석자 만족도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행사의 내실을 제고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시정요구(안)에 동의드립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들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잠시만요.

○소위원장 강준현 잠깐만요.

○김용만 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아니에요?

○김용만 위원 시정이 아니고 시정요구(안) 제도개선에 동의한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제도개선에 동의……

○김용만 위원 이해했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21페이지입니다.

본부인건비 및 지방보훈청인건비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국가보훈부는 24년과 25년 다른 세부사업 예산을 공무원 인건비로 이용·전용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과원 운영과 직급별 편성 인원, 실지급 인원 간 차이, 초과근무 증가 등이 반복됐음에도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직급별 현원과 초과근무 실적 등을 반영해 인건비를 적정하게 편성하고 보훈사업 예산을 반복적으로 이용·전용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주의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주시가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시정요구(안)에 동의드리고 신동욱 위원님이 주신 말씀 유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일반예산이 아니라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국립묘지 운영, 독립운동 사료수집비 이런 것까지 인건비로 전용하는 것은 제가 보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22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부정보화사업입니다.

세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25년 국가정보관리원 화재로 인해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의 마비로 급여 과오급금이 120건, 약 9780만 원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있었고.

두 번째, 정보시스템이 39일간 마비되었으나 24년과 25년 국가보훈부 정보시스템 자체 백업 관련 예산 집행내역은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통합정보시스템 개선사업 만족도를 조사하면서 실제 현장 사용자를 배제하고 사업을 직접 추진한 사업부서 및 정보화담당관 소속 내부 담당 직원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첫 번째 안에 대해서 국가보훈부는 이중화 백업시스템 구축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잘못 지급된 금액에 대해 전액 환수할 것이라는 내용의 시정 요구가 있었고.

두 번째 사안에 대해서 국가보훈부는 핵심 전산망 재해복구 예산을 방치하여 장기간의 행정 마비와 수기 처리 사태가 유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주의를 요구 하셨습니다.

세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는 자체 설문조사를 중단하고 실제 현장 사용자가 참여하는 객관적인 표본 추출 및 외부 평가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시정요구(안) 2·3번은 동의를 드리는데 1번에 대해서는, 현재 잘못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97.4% 정도 회수를 완료했고 그것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국가보훈부가 이중화 백업 시스템 구축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행안부 예산으로 이미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편성은 맞지만 보훈부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그냥 정부 예산으로 보신다면 가능하고 아니라면 이 문구를 조금 바꿔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김용만 위원 동의합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그러면 ‘국가보훈부는 국가정보관리원 화재로 발생한 과오금에 대해서 전액 환수할 것’으로 수정 문구를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예, ‘국가보훈부는 국가정보관리원 화재로 발생한 과오금에 대해서 전액 환수할 것’으로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전문위원님, 인지하셨지요?

○전문위원 류승우 예.

○소위원장 강준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23페이지, 기금 관련 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등 대부관리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이차보전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매년 반복하고 있으며 변경 이후에도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이차보전금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연례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미지급금 발생을 방지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주의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시정요구(안)에 동의드립니다. 향후 추계의 정확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24페이지, 골프장 위탁운영 및 골프장 시설투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88골프장은 성과관리의 적정성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88골프장 매각 여부에 대한 편익비교분석 연구용역의 객관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국가보훈부는 88골프장의 성과관리 체계를 재검토하고 객관적인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여 매각·존치 및 증설 여부를 재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동의드립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신동욱 위원님.

○신동욱 위원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내장객도 1.5% 감소했고 순이익도 11.6% 감소했고 자기자본이익률도 목표치가 72.7%인데 50.6%밖에 없고, 그래서 매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매각을 하는 게 이익인지 아니면 존치하는 것이 이익인지를 계속 분석을 하시는데 존치를 했을 때 이익이 훨씬 크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자세히 봤더니 대부분은 앞으로 땅값이 그만큼 오를 것이기 때문에 존치를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실제 다른 이용지표들을 보면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결론은 존치하는 것이 좋다, 즉 땅값이 오르니까 존치 가치가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지금 현재 거기서 나오는 기금 증식도 120억 이상이 기금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가 연구용역 분석을 끝내서 88골프장을 지속 운영하는 것으로 대통령께도 이미 보고를 드렸고 이번 예산의 수입 안에도 그것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매각에 대한 것은 매각하지 않는 것으로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올해 예산에……

○신동욱 위원 그러니까 운영 효율성에 대한 지표는 자꾸 떨어지고 그런데 글썽요……

매각을 해야 된다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거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선진화 계획…… 예전에 매각을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도 있었는데 그게 애초에 88골프장을 조성할 당시에 상이자들의 정지연금으로 했던 것도 있고 회원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돈도 있고 여러 가지 분석을 했을 때 매각보다는 이걸 지속해서 보훈기금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이 보훈기금을 통해 국가유공자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신동욱 위원 운영을 해서 얻는 수익이 매각해서 나오는 그 돈으로 운용을 했을 때보다는 낫다고 보시는 거예요, 여전히?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신동욱 위원 그래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훨씬 좋다……

○신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제도개선에도 동의를 못 하시는 거예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아닙니다. 제도개선에 동의드립니다.

○신동욱 위원 그래요? 옆에 ‘동의 곤란’이라고 있어서……

저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다음 사항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25페이지, 참전기념사업지원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주관한 제15회 대학생 국토대장정 사업의 국고보조율이 91%에 달하여 통상 민간경상보조 국고보조율 수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입니다.

동 사안에 대해 두 가지 시정요구가 있습니다.

첫째, 국가보훈부는 재향군인회 국토대장정 사업에 91%의 보조율이 적용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지침을 위반하여 과다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 즉시 환수 조치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변상을 요구하셨고.

두 번째, 국가보훈부는 모든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최소 자부담률 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하고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성 예산 교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조금 심의 및 정산검증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정부 측은 2개 의견 다 시정으로 해 주실 것을 희망을 드립니다.

김용만 위원님이 변상으로 의견 주시긴 했는데 이게 실은 91%가 조금 높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향후 저희가 자부담 비율은 좀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토대장정이라는 것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6·25 전쟁에 관련해서 전적지도 답사하고 병영 체험을 하는 등 거의 다 대학생들이 참여 인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에게 국토대장정을 통해서 6·25 정신을 알려 나가는 그런 사업인데, 물론 변상을 하면 향군이 변상을 해야 되겠지만 향군이 또 이 대학생들에게 이것을 다시 할 수도 있고 또 지금 변상에 해당하는 규정도 없고 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걸 상향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는 그냥 변상만 시정으로 조금 희망을, 부탁을 드립니다.

○김용만 위원 75주년이어서 갑자기 한 거예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그것은 아니고요. 2018년부터 국토대장정은 계속하고 있었습니

다.

○김용만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지금까지……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그런데 예전에는 자부담이 조금 높았었는데 아마도……

○김용만 위원 조금이 아니고 지금 자부담률을 보면 다 40%, 심지어 24년에는 60%였

단 말이에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그렇게 하다가……

○김용만 위원 그런데 갑자기 25년에 10%도 안 되게 낸다는 게……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저희가 예전에 향군 보조금을 보훈기금에 잡았다가 그게 25년도에 폐지가 되면서 아마 자부담률을 이렇게 좀 낮춰 줬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

다.

○**김용만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예산 운용계획 집행지침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공법단체들에게 하는 것과 공법단체가 아닌 단체들에게 하는 것과, 지금 운용계획 지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어겨 가면서까지 우리가 지원을 한다는 것은 어찌 됐든…… 우리가 지침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지키려고 있는 건데.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그런데 지금 지침에도, 실은 여기는 향군이어서 그렇긴 한데 민간사업자에게는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복지부나 행안부에도 93% 이렇게 하는 것도 있긴 하니까……

일단은 저희도 이게 좀 많다고 생각은 해서 내년도부터는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변상에 있어서는 이번에 시정으로 회망을, 부탁드립니다.

○**김용만 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오해 살 수 있어요. 특정 단체에게만 특혜성이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까지 자기부담률이 40%나 되던 것들이 갑자기 10%도 안 되게끔 지원을 받는다, 심지어 지침까지도 어겨 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혹여라도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제가 재향군인회분들에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높게 평가를 하는데요, 그래도 보훈부의 가장 힘든 업무 중의 하나가 각각의 공법단체 아니면 민간단체들에게 지원을 할 때 형평성이라는 게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해 사지 않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고.

변상을 시정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주의해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박민규 위원님.

○**박민규 위원** 강윤진 차관님, 오늘 결산 준비하시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서류와도 다른 답변을 한 서너 번 계속하시는데 이런 것은 국회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주의를 요청드리고요.

또 하나, 방금 전에 재향군인회에게 배상을 요구하면 재향군인회에서 참가한 대학생들한테 배상을 할 수도 있다? 국회에 대한 답변이 좀 적절치 않습니다. 재향군인회가 어떤 단체인데 대학생들한테 배상을 전가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방금 전에 국고보조율 관련해서 91%를 넘어선 비중을 얘기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예를 드셨어요. 한번 까 볼까요, 어떤 사업들이 그렇게 국고보조율 90%가 넘는지?

차관님,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국회에 대해서, 지금 김용만 위원이 얘기하시는데 국가보훈부 그동안 나름대로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변상을 시정으로 동의해 줬지만 국가보훈부차관님으로서 준비가 미흡했다는 점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앞으로 답변에 주의를 요청드립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발언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그러면 첫 번째 시정요구는……

○**소위원장 강준현** 변상을 시정으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26페이지,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입니다. 세입 일반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일반회계 전입 의존도는 89.2%에 달한다는 문제점과 환수한 친일재산의 매각 지연으로 인한 문제, 기부성금 모금 방법이 시행령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재 모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 두 가지 시정요구가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기금 간 불균형과 독립유공자 예우 소홀을 초래하지 않도록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기부금 유치 및 재정 자립 대책을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주의를 요구하셨고,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일반회계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시정요구(안)은 제도개선을 희망드립니다.

○김용만 위원 같은 맥락이고요. 그러니까 보훈기금, 순애기금을 같은 잣대로 들여다봐야 된다. 형평성 측면에서는 이 2개의 차이로 하여금 괜히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챙겨 달라는 거고, 제도개선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전문위원 류승우 27페이지, 토지매각대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친일재산 매각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자체, 군부대 등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 매각 제한 재산의 매각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국가보훈부는 환수된 친일재산 매각을 위한 자체 노력과 함께 지자체, 군부대 등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 매각 제한 재산의 매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시정요구(안)에 동의드립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28페이지,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생활지원금 지급 소요의 대부분을 기금 자체 재원이 아닌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친일귀속재산의 원활한 매각과 추가적인 기금 수입원 확보 등을 통해 일반회계 전입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주의를 요구하셨고, 또

한 국가보훈부는 지급인원 증가를 반영해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친일귀속재산 매각 협의와 신규 수입원 발굴 등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재원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첫 번째 시정요구(안)은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29페이지, 마지막 부대의견 차례입니다.

지금 저희 유인물에는 다섯 가지 부대의견만 제시돼 있는데 아까 좀 전에 김용만 위원님께서 국가보훈부 지방보훈회관 건립사업 관련 부대의견을 하나 추가하자고 하셔서 가지고 총 여섯 가지 부대의견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안은 앞서 개별 사업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진료비, 전직지원금, 이차보전금 등 실제 지급 소요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부처 차원의 일관된 추계 기준을 마련하고 실제 지급 소요를 충실히 반영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다라는 부대의견을 주셨고.

다음으로 국가보훈부는 사업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미지급금을 부처 차원에서 총괄 관리하고 미지급금 발생 규모, 정산계획 및 미지급금에 따른 이자 부담 처리 방안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라는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국가보훈부는 시설·건립사업의 예산편성 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설계 등 착공 전 사전절차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이 없는 보조금을 실집행기관에 교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오늘 안건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지금 그것 말씀하셨나요, 국가보훈부는…… 9페이지 부대의견?

○전문위원 류승우 아닙니다. 그것은……

○소위원장 강준현 어떤 것 말씀하신 거예요?

○전문위원 류승우 지금 29페이지 기존에 나와 있던 부대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추가된 부대의견 문구는…… 제가 보고를 드릴까요?

○소위원장 강준현 직접 말씀하시지요.

○전문위원 류승우 예.

아까 김용만 위원이 추가하신 부대의견 문구는, 일단 초안은 ‘국가보훈부는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의 장기 소요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포기 지자체에 대한 3년간 재신청 제한 외에 추가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라는 문구를 정부 측에서 마련해 왔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맞습니까?

○김용만 위원 추가 합리적인 개선방안이라기보다는 실제 보훈회관 건립에 적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강구한다 이 정도 수준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것은 부대의견으로 넣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교통시설 시내버스 요금 그것에 있어서 보훈부의 결산에 부대의견을 단다 해서 아니면 달아서 예결특위 쪽에다 보내서 예산처에다가, 그러니까 어찌 됐든 보훈부가 갖고 있는 주요 정책 중의 하나인 교통지원금에 대해서 미지급금 발생분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서 예산처를 통해 선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 하나 달아서 가시는 것이 보훈부가 나중에 예산처를 설득하기에도 더 낫지 않으시겠어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 협의할 적에도 도움이 돼서 부대의견을 주시면 잘 반영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러면 그렇게 2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부분에서는 보훈회관의 합리적인 표현보다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이고요. 또 추가로 하나 더, 교통시설 이용지원금 중 미지급금이 지속 발생하던 부분을 예산처와 협의하여 선확보할 수 있게끔 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리 한번 해 보시지요.

○전문위원 류승우 그러면 처음 말씀하신 부분은 ‘국가보훈부는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의 장기 소요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포기 지자체에 대한 3년간 재신청 제한 외에 적극적인 참여를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김용만 위원 ‘적극적인 사업 이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이렇게 하시지요.

○전문위원 류승우 ‘적극적인 사업 이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김용만 위원 예,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든 대책을 마련한다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통지원금.

○전문위원 류승우 교통지원금 미지급금 해결을 위한 예산처와 관련해서 선확보한다.....

○김용만 위원 그러니까 반복하여 발생하는 교통지원 미지급금에 대한 예산처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선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정도면 될까요, 차관님?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소위원장 강준현 정리해 보시지요.

○전문위원 류승우 ‘반복하여 발생하는 교통시설지원금 미지급금에 대한 예산처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관련 예산을 선확보하도록 한다’.

○김용만 위원 일부 자구 수정은 전문위원께서 챙겨 주십시오.

○전문위원 류승우 예.

○소위원장 강준현 그러시면 되겠네요.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보훈부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건의 심사는 마쳤습니다만 의결은 추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족수 미달로 인해서.

마무리하기 전에 강윤진 차관님 옆에 계신 분이, 소개 좀 해 주세요.

○국가보훈부보훈문화정책실장 나치만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실장 나치만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보훈문화실장님이세요?

○국가보훈부보훈문화정책실장 나치만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옆에 분은 성함이……

○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 오경준 기획조정실장 오경준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운진 차관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정비를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강준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과 관계 공무원 배석 하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시지요?

○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 임진홍 임진홍 기초실장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예.

그러면 류승우 전문위원님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전문위원입니다.

권익위 소관 검토하실 사항은 9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경상이전수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보상금 상환액의 법정기한을 넘긴 임의미납액이 과다함에도 권익위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 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시정을 요구하셨고 다음으로 권익위원회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내부 처리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 상환액을 대상 공공기관으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부대의견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한삼석 지적해 주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보상금 상환액 징수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2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운영입니다.

지적사항은 세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윈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의 참여율 저조로 행정심판 제도의 완전한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두 번째, 실제 사용 중인 윈스톱 행정심판 소프트웨어 자산을 국유재산대장에 지연 등재함에 따라 감가상각비 10억 원을 누락하고 무형자산을 과대 계상하는 회계 오류를 범했던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예산집행지침을 무시하고 사무용 PC와 컬러 프린터 등을 연말에 집중적으로 구매하는 행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권익위원회는 윈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미참여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하여 참여를 확대하고 향후 다수 기관이 참여하는 정보화사업 추진 시 법적·제도적 여건과 참여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고 두 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권익위원회는 국가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국유재산 및 무형자산 결산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지막 사안에 대해서는 권익위원회는 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연말에 몰아서 소진한 관행을 즉각 시정하고 관련 결재권자 및 담당자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향후 자산취득비는 반드시 연초에 수립된 연간 수급계획에 따라 적기에 집행하도록 예산집행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한삼석 지금 지적해 주신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정부 전체 내용 동의하고요. 다만 시정요구 유형 중에 제도개선 사항은 주의로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첫 번째 지적사항에서 이것은 법령상이나 제도상의 미비라든지 또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제도를 바꿔야 되고 그런 점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 두 번째 제도개선 요구사항도 이것은 회계상 오류를 시정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주의 정도로 바꿔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정에서 주의로 바꿔 주셨으면 하는 이유는 이것은 당시 저희가 그냥 임의대로 일을 처리한 게 아니고 저희 권익위원회 자산취득비 예산은 작년 3월에 다 집행한 걸로 나와 있고요. 지금 이 문제는 국가정보원에서 윈도우10 사용기간이 끝나서 11로 바꾸는 과정에서 낙찰차액 같은 것들을 좀 이용해서 전 부처가 마련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공문에 의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정보다는 주의 정도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즉슨 지금 무슨 계약관계 혹은 계약만료 시점 같은 것들로 하여금 연말에 구매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의미인가요?

○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 임진홍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확보된 자산취득비는 3월에 다 집행을 했고요. 작년 10월에 윈도우10이 기술지원이 종료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안상 문제가 발생하니까 국정원이 모든 중앙부처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노후 PC,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되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고 11로 업그레이드 안 되는 것은 PC를 교체하라는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낙찰차액 한 1억 8000정도를 이용해서 노후 PC를, 그러니까 11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안 되는 것, 통째로 교환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득이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김용만 위원 일시적이었냐?

○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 임진홍 예, 일시적입니다.

○김용만 위원 윈도우11이 한마디로 지원서비스가 종료, 만료가 되는 걸로 하여금 국정원에서 요청한 공문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10월 이후에 해야 됐고 11월이 아니었고 12월이 됐다 이 얘기가신 거지요?

○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 임진홍 예산에 편성된 모든 것은 3월에 이미 집행을 완료한 상황이고요.

○김용만 위원 아, 실질적인…… 제가 그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3월에 예산을 미리 집행을 했어요?

○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 임진홍 25년 예산의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사는 거는 이미 다……

○김용만 위원 해 봤고?

○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 임진홍 했고 그중의 일부 낙찰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낙찰차액을 이용을 해서 연말에, 그러니까 9월에 공문이 와서 금년 말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라라는 국정원의 요청이 있어서 거기에 조치한 사항을 지적해 주신 겁니다.

○김용만 위원 10월이 아니라 9월?

○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 임진홍 9월에 공문이 왔고요. 실제로 구입한 것은 11월 쯤에……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한삼석 10월.

○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 임진홍 11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김용만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대략 이해를 했고요. 제가 말씀 주신 주의 사항 조정하는 것 동의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한삼석 고맙습니다.

○신동욱 위원 주의 줄 것도 아니네요, 소명이 됐다면.

○김용만 위원 제 생각에도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 보면……

부위원장님, 제도개선을 주의로 바꿔 달라는 것은 그 말 의미로 봤을 때는 개선할 제도가 없다고는 하지만 사실 주의라는 것은 상위 개념인 것은 인지하고 계신 거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한삼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로 제도개선을 바꿔서 받으시겠다는 거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한삼석 예. 이것은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제도를 개선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이런 낙찰차액 집행 잔액들을 어떻게 투

명하게 집행할지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리고 신동욱 위원님 말씀 따라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제 생각에는 철회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 임진홍** 예, 사실은 주의를 받을 사항도 아니고 당연히 정당한 집행 그 자체였습니다.

○**김용만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3번에 대해서?

○**김용만 위원** 예.

○**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 임진홍**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됐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한삼석** 예,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4페이지되었습니다.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동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용역비 예산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포상금을 삭감하여 관리용역비로 끌어다 쓰는 심각한 목적 외 예산 사용이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포상금을 정보화 시스템 용역비로 부당 전용하고 세목 간 임의 충당을 남발한 관련 책임자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정보화 사업 예산 편성 시 소요액을 정밀하게 산출하며 완료된 정보화 사업의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사후성과평가 체계를 즉각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한삼석** 큰 틀에서는 지적하신 내용 동의를 하는데요. 제가 국가정보 관련 화재사고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쓰게 됐다는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얘기는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고 예비비를 써도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굳이 여기에서, 지금 나름대로 의미나 목적을 갖고 있는 공익신고자 포상금이라는 걸 전용했나요?

○**국민권익위원회권익개선정책국장 오정택** 권익개선……

○**김용만 위원** 예, 말씀 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권익개선정책국장 오정택** 권익개선정책국장입니다.

작년 9월에 국정자원관리원에 화재가 났을 때 그런 서버라든지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과 관련해 가지고 행정안전부하고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가지고 서버가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서버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행안부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예비비를 통해서 하려고 그런 논의는 있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그렇게는 하지 말고 각 기관마다

있는 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긴급하게 좀 정리를 하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편성된 예산 내에서 전용을 했던 것입니다.

○**김용만 위원** 예산처에서……

○**국민권익위원회권익개선정책국장 오정택** 예. 기획재정부이지요, 그때 당시는.

○**김용만 위원** 기획재정부에서 예비비를 쓰지 말고……

○**국민권익위원회권익개선정책국장 오정택** 예, 예비비를 쓰지 말고……

○**김용만 위원** 또 다른 예산코드에 있는 것을 이전용해 와서 사용을 해라라는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국민권익위원회권익개선정책국장 오정택** 예, 각 기관마다 편성된 예산이 있는데 그중에서 혹시나 불용되거나 좀 남을 수,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전용을 해서 하도록 하고 예비비는 되도록 최후 수단으로 쓰자 그렇게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재정법에 따라 가지고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전용을 하게 된 합법적인 업무 처리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알겠습니다. 제도개선 정도 수준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주의를, 또 개선할 제도가 없니까 주의를 받으시겠습니까? 이것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국민권익위원회권익개선정책국장 오정택**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불문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화재 때문에 불요불급한 그런 조치였고요.

○**김용만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소관하고 있는, 만약에 여기에 기재부나 예산처가 있었다면 사실은 둘 다 지적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별도의 목적이 있는 예산을 따로 쓰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맞는 결정은 아니었다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그러려고 쓰려고 예비비를 하는데 혹시 모를 일에서 예비비를 쓰는 게 더 용이한 사건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포상금에 있는 예산을 끌어다 써라? 저는 아무리 기재부의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 기재부가 소관 상임위라면 기재부도 이것은 제도개선이든 주의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개선정책국장 오정택** 위원님, 국가재정법……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한삼석** 시정요구 사항을 주의 정도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예.

○**소위원장 강준현** 자, 그러면 조치 유형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지금 잠깐 놓쳐 가지고……

○**신동욱 위원** 주의.

○**소위원장 강준현** 주의입니까?

○**김용만 위원** 예.

○**소위원장 강준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5페이지입니다.

부패·고충제도개선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장기 미이행 과제가 누적되고 있고 이행을 미루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불성실한 관행이

반복되고 있으며 법령 개정이나 고충 난제 과제는 해소되지 못하고 장기 미이행으로 남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권고 사전 단계에서 피권고기관 및 관계부처와의 입법·예산 실무협의를 강화하여 이행 가능성을 철저히 사전 검증하고 3년 이상 장기 미이행 과제에 대해서는 미이행 내역의 정기적 대외 공개 등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이행 강제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한삼석 지적해 주신 내용 동의하고요.

다만 시정요구 사항은 주의 정도로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말씀들은 오래 전부터 상임위에서 논의가 돼 왔었고요. 그래서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충을 유발하는 민원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다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 점검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어서 23년, 24년, 25년 이행률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미진한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 더욱 열심히 쟁겨 보겠습니다. 이것은 주의 정도로……

○김용만 위원 이행률이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한삼석 지금 23년에 78.4%였는데요. 그다음에 24년에 82.6%, 작년 기준으로 87% 정도까지 높아졌습니다.

○김용만 위원 동의합니다. 주의로 조정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한삼석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예, 계속 심사하는데요 시정요구안만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류승우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사업입니다.

시정요구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사업의 경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성·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추진방식을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한삼석 지적해 주신 사항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7페이지입니다.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권익위원회는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변경 절차를 거쳐 집행하고 근거 없는 사후정산 방식으로 계약대금을 추가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한삼석 지적해 주신 사항 동의하고요. 다만 이 사항은 별도 제도를 개선할 사항이 아니라 그 계약 관련 세부 절차를 제대로 못 챙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정조치 유형은 주의 정도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박민규 위원님.

○박민규 위원 예, 동의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한삼석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8페이지입니다.

신고자보호보상 및 공익신고제도운영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첫 번째, 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가 보상금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적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자체 규정 제정 현황 등을 점검하고 통지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고 두 번째, 권익위원회는 보호신청의 종결·취하 사유를 분석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보호조치 미이행 사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 이러한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세 번째, 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인정 제도를 마련할 것 이러한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한삼석 지적해 주신 사항 전체 다 동의하고요.

다만 시정조치 요구와 관련해서는 두 번째, 보호신청 사건 종결 취하가 많다는 취지의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서 제도개선 요구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보호사건 접수받아서 보면 부패신고나 공익신고 요건이 안 돼서 그냥 아예 종결이 되거나 그다음에 불이익 조치 자체가 없는데 보호신청을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종결 내지 각하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것을 제도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개선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주의 정도로 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좀 더 꼼꼼하게 잘 챙겨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들도록 하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의견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주의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예.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10페이지입니다.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운영입니다.

11페이지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첫 번째, 권익위원회는 채용실태 전수조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후속조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 이러한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고, 두 번째 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이라는 출범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사인력의 적정한 확보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신고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 이러한 내용으로 주의를 요구하셨습니다.

세 번째, 권익위원회는 실제 신고·조사 및 출장실적을 반영하여 사업 규모와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연례적인 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이러한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한삼석 세 가지 지적사항 다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실태점검 후에 수사 의뢰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후속조치 이행 관리도 보다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문위원 류승우 12페이지입니다. 행정심판 운영 사업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첫 번째, 권익위원회는 사건 유형별 주요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표준화하고 단계별 처리기간과 장기계류 사유를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심리·조사 인력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등 행정심판 재결기간 단축을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 이러한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고, 두 번째 권익위원회는 타 법률에 이미 도입된 개인정보 보호조치 규정을 참고하여 행정심판 절차상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조속히 개선하고, 개선 전에는 청구서·참가신청서 송달 시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 등 실질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이러한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한삼석 지적하신 사항 모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마지막 부대의견인가요?

○전문위원 류승우 예, 마지막입니다. 부대의견입니다.

첫 번째 부대의견은 개별 사업에서 검토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대의견입니다.

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2025년도 국가청렴도 점수가 전년 대비 하락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라는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이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의결은 추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위원(8인)

강준현 김용만 김재섭 김현정 박민규 박홍배 신동욱 조정훈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전문위원 구현우

전문위원 류승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김영수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실장 서은숙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장영현

한국교통연구원

경영부원장 신희철

국가보훈부

차관 강윤진

기획조정실장 오경준

보훈문화정책실장 나치만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남동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겸사무처장 한삼석

기획조정실장 임진홍

권익개선정책국장 오정택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대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 양청삼